

강한공주
행복한시민



공주문화관광재단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2026. 6. 23.



기획감사실

공주문화관광재단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I.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26. 5. 11. ~ 5. 22. (10일간)
- 수감대상 : 공주문화관광재단
- 감사범위 : 2023. 1. 1. ~ 감사일 현재까지
- 감사인원 : 1개반 7명(기획감사실장 외 6명)
- 감사 중점사항
 - 예산, 회계 등 기관 운영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 점검
 - 채용, 인사, 출장, 휴가,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등 복무규정 준수 여부
 -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지연, 방치 등 직무태만 행위
 - 사업·용역 수행의 적정성, 재산(물품 등) 및 시설물 관리 실태
 - 기타 업무 전반의 문제점 및 민원 발생 등

II. 감사 결과

○ 행정상

(단위 : 건)

계	본 처 분			현지처분		비고
	시 정	주 의	개선/권고	시 정	주의/개선	
46	14	23	9	-	-	-

○ 재정상

(단위 : 원)

구 분	계	환 수	변 상	감 액	지 급
계	4,788,640	4,345,000	443,640	0	0
본 처 분	4,788,640	4,345,000	443,640	-	-
현지처분	0	-	-	-	-

○ 신분상

(단위 : 명/건)

계	중징계	경징계	문책(훈계)	문책(주의)	기관경고
12	-	1	5	3	3

○ 지적사항 총괄

1) 본처분 요구사항 목록 (2-1)

(단위 : 명/건/원)

연번	제 목	처분요구사항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계	환수·변상 등	감액
계	40건	1	8	14	23	9	4,788,640	4,788,640	
소계	22건	0	6	8	14	4	4,396,240	4,396,240	0
1	단일사업 분할발주 및 계약 부적정				1				
2	수의계약 대상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 검토 소홀				1				
3	직접생산확인 관련 수의계약 부적정					1			
4	경관조명 등 설치사업에 대한 발주 부적정				1				
5	행사 및 공연 관련 계약체결 절차 부적정			1					
6	무이자 계좌 개설에 따른 세입 확보 소홀		1		1				
7	신용카드 등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관리 미흡			1					
8	세입예산 편성관리 및 예산변경 절차 이행 소홀				1	1			
9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운영 소홀				1				
10	근무복 등 피복비 집행 부적정			1			4,345,000	4,345,000	
11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1				
12	공공요금 연체료 지출 부적정			1			51,240	51,240	
13	사무기기 임차 운영 등 예산 집행 부적정		2	1		1			
14	물품수급관리계획 미수립				1				
15	차량 임차계약 부적정				1				
16	총괄 관리용역 발주 부적정				1				
17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검토 부적정				1				
18	가설건축물 관리 소홀			1					
19	착공신고 시 제출서류 검토 소홀				1				
20	문화도시 홈페이지 고도화사업 수의계약 및 사업관리 부적정		2		1				
21	통합업무시스템 클라우드 서버 임차계약 체결 및 공인관리 부적정		1	1	1				
22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 부적정			1		1			

2) 본처분 요구사항 목록 (2-2)

(단위 : 명/건/원)

연번	제 목	처분요구사항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계	환수·변상 등	감액
소계	18건	1	2	6	9	5	392,400	392,400	0
2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소홀			1		1			
24	업무용 컴퓨터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보안관리 소홀				1				
25	백제문화전당 홈페이지 구축 용역 준공검수 부적정			1	1				
26	인사 채용 시 자치단체 사전협의 부적정				1				
27	인사 채용 시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1	2		1				
28	인사 채용 공고기간 부적정	합건	합건		1				
29	인사 채용 시 점수기준 임의 적용				1				
30	승진 의결 관련 기록물 관리 부적정					1			
31	성과평가 평정비율 적용 부적정					1			
32	인사 채용 관련 규정 관리 소홀					1			
33	직원 의무교육 실시 및 이수 소홀				1				
34	포상대상자 공적 심의 미실시					1			
35	호봉 산정 업무 부적정			1					
36	호봉의 정정 및 재확정 업무 부적정			1					
37	여비 지급 소홀			1			392,400	392,400	
38	행동강령 관리 업무 소홀				1				
39	휴직 실태점검 소홀				1				
40	복무 관리 소홀			1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단일사업 분할발주 및 계약 부적정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주의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표】 단일사업 분할발주 및 계약 현황

연도	사업명	분할개수	계약방법(개수)	비고
2023년	2023 공산성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4	수의계약(4)	
	2023 미래유산도시브랜딩 사업	11	수의계약(11)	
	2023 공주문화재야행	12	수의계약(12)	
2024년	2024 공주생활문화축제	7	수의계약(7)	
	2024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10	입찰(1), 수의계약(9)	
	2024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10	입찰(2), 수의계약(8)	
	2024 미래유산도시브랜딩 사업	11	수의계약(11)	
	2024 공주 문화유산 야행	25	수의계약(25)	
	2024 미래유산도시페스타 웰컴투신관동	18	입찰(1), 수의계약(17)	
2025년	2025 공산성 미디어아트 사업	6	입찰(1), 수의계약(5)	
	2025 디지털헤리티지페스타	4	입찰(1), 수의계약(3)	
	2025 미래유산도시브랜딩 사업	11	수의계약(11)	
	제71회 백제문화제 웅진판타지아	9	수의계약(9)	
	제71회 백제문화제 웅진성 퍼레이드	6	입찰(1), 수의계약(5)	
	2025 비단가람온길 사업	5	수의계약(5)	
	2025 공주 국가유산 야행	19	수의계약(19)	
	2025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	5	수의계약(5)	
	2025 미래유산도시페스타 웰컴투신관동	8	입찰(1), 수의계약(7)	
2026년	백제문화전당 개관식 및 축하공연	4	수의계약(4)	
	백제문화전당 브랜드 상설공연(가족극)	9	수의계약(9)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제2호에 따라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출자·출연 기관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 하여야 한다.

- 또한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 또는 제조·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분할계약의 금지”에 의하면

가.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아래의 공사
 - 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 다)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 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작업 위치)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나”에 따른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1인 전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그러나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2023년부터 2026년 감사일 현재까지 위 【표】와 같이 단일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 및 계획단계부터 분할계약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2023년 3건, 2024년 6건, 2025년 9건, 2026년 2건에 대하여 여러 개로 분할 발주하여 다수의 업체와 수의계약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의 업무 연찬을 통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에 분야별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사업추진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분할발주 대상이라면 분할발주 검토서를 작성하여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여러 개로 분할 발주하여 다수의 업체와 수의계약 한다는 의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수의계약 대상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 검토 소홀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주의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표 1】 4년간 계약체결 현황

[단위 : 건, 천원, %]

구분	전체 계약		수의계약		입찰계약		건수 대비 수의계약율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년	313	4,181,898	313	4,181,898	0	0	100	
2024년	378	8,384,799	373	6,192,799	5	2,192,000	98.6	
2025년	312	13,615,306	300	8,184,633	12	5,430,673	96.1	
2026년	98	2,164,578	97	1,988,578	1	176,000	98.9	5월 기준

【표 2】 수의계약 현황

[추정가격 기준 / 단위 : 건, %]

구분	전체 수의계약 체결건수 (a)	1인 건적 제출 수의계약						2인 이상 건적 제출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나라장터 이용 2인 이상 건적 제출 안내 공고	
				여성기업 등 *		공연·전시 등			
		건수(b)	비율(b/a)	건수(c)	비율(c/a)	건수(d)	비율(d/a)	건수(e)	비율(e/a)
2023년	313	282	90.1	17	5.4	14	4.5	0	0
2024년	373	313	83.9	42	11.3	18	4.8	0	0
2025년	300	231	77.0	38	12.7	29	9.7	2	0.6
2026년	97	80	82.5	5	5.1	11	11.3	1	1.1

* 여성기업 등 ☞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청년창업기업 포함.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제2호에 따라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예산편성의 원칙”에 의하면 예산편성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출예산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 경비만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전차조달시스템 활용, 조달·구매 예산은 수의계약 축소, 경쟁확대 등을 통해 관련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금액 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제6절”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 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 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 그러나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위【표 1】와 같이 202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전체계약 건수 대비 2023년 100%, 2024년 98.6%, 2025년 96.1%, 2026년 98.9%의 비율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표 2】의 수의계약의 현황을 보면 금액 기준에 따른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전체계약 건수 대비 2023년 90.1%, 2024년 83.9%, 2025년 77.0%, 2026년 82.5%의 비율로 계약하였으며, 그 외 추정가격 2천만원이 초과되는 계약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에 의한 공개 경쟁이 아닌 여성기업 등 특정한 목적의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거의 계약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모든 계약은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관련 규정의 업무 연찬을 통하여 입찰 방식의 계약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직접생산확인 관련 수의계약 부적정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개선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표】 사업 관련 직접생산증명서 미제출 업체와의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비고
1	2023 기획전시(에코이스트) 관련 홍보물 제작	12,600	비공개	
2	2023 공산성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옥외홍보 및 홍보물 제작	21,500	비공개	
3	(공주갤러리주간사업 운영) 행사물품 제작	12,020	비공개	
4	2023 문화가 있는 날 꿈꾸는 어린이 예술극장 3회차 행사	33,000	비공개	
5	2023 고마시민문화시장 마켓콤 청소년 문화누림 행사운영	14,500	비공개	
6	2023 공유전시 프로젝트 「고흐,향기를 만나다」 전시기획	25,000	비공개	
7	미래기억도시브랜딩 문화도시 공주 성과 공유회 아카이빙 및 전시	17,293	비공개	
8	2023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	19,700	비공개	
9	2023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전시 제공 용역	30,000	비공개	
10	문화공간 어디셔도 원도심 공유공간 프로그램 골목길 미래유산 전시	22,000	비공개	
11	갤러리 투어 명화전 전시기획 대행용역	32,000	비공개	
12	2023 공주문화재야행 인쇄물 제작 용역	14,817	비공개	
13	2023 시각예술지원사업 관련 사진촬영 및 영상제작 용역	12,600	비공개	
14	지역거점페스타 원도심 경관 연출 및 아카이빙 영상촬영	17,000	비공개	
15	2023 공주 공산성 미디어아트 아카이빙 영상 제작·편집	19,965	비공개	
16	공주갤러리주간사업 홍보물 제작	11,616	비공개	
17	2024 기획초대전 홍보물 제작	17,000	비공개	
18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s/w사업 야간관광 홍보물 제작	32,997	비공개	
19	2024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공주 공산성 홍보물 제작	18,000	비공개	
20	2024 공주 문화유산 야행 옥외홍보물 제작·설치	14,000	비공개	
21	2024 미래유산도시페스타 웰컴투신관동 홍보물 제작	49,712	비공개	
22	2024 기획초대전 관련 전시장 조성 및 부대행사	12,000	비공개	
23	2024 공주 시각예술 작가전 사업 관련 오픈식 행사 용역	22,000	비공개	
24	미래유산활용 박람회 부대행사 대행 용역	11,800	비공개	

25	공주생활문화축제 인쇄물 제작 및 전시운영 용역	15,000	비공개	
26	2024 공주 문화유산 야행 인쇄물 제작	12,469	비공개	
28	2024 문화공간 어디췌어 조성사업 홍보 영상촬영 제작	13,900	비공개	
29	2024 공주그림상점으로 아카이브 영상 제작	36,120	비공개	
30	미래유산학당 청년 공예인 브랜딩-업 핸드메이드페어 부스 운영	20,000	비공개	
31	2025 국립한글박물관 순회전 어린이나라 관련 홍보물 제작	11,500	비공개	
32	2025 공주갤러리주간사업 홍보물 제작	14,000	비공개	
33	2025 지방소멸대응기금 s/w사업 야간관광 홍보물 제작	21,500	비공개	
34	2025 미래유산도시페스타 웰컴투신관동 홍보물 제작	49,000	비공개	
34	제25회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 홍보물 제작	16,300	비공개	
36	공주문화예술촌 입주예술가 릴레이전 홍보물 제작	13,028	비공개	
37	2025 야간관광 통합 홍보물 제작	12,000	비공개	
38	2025 공주 국가유산 야행 옥외홍보물 제작·설치	14,000	비공개	
39	2025 공주 차세대 작가전 홍보물 제작	15,000	비공개	
40	2025 곧 매니지먼트 로컬 브랜드 홍보물 제작·발표회 운영	21,000	비공개	
41	2025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 전시행사 용역	18,524	비공개	
42	2025 공주 시각예술 작가전 관련 오픈식 행사 대행용역	20,000	비공개	
43	2025 공유전시 전시기획 대행용역	33,000	비공개	
44	2025 공주갤러리주간사업 갤러리 기획전시 운영	43,500	비공개	
45	2025 공주생활문화축제 전시운영 용역	15,000	비공개	
46	2025 공주문화관광재단 기획초대전 전시 운영	45,000	비공개	
47	2025 '색으로 행복을 그린 앙리 마티트 레플리카' 전시기획	34,000	비공개	
48	2025 공주 국가유산 야행 인쇄물 제작	11,000	비공개	
49	웅진판타시아 음향효과 제작 및 영상 마스터링 용역	40,326	비공개	
50	웅진성 퍼레이드 읍면동 영상 촬영 및 편집	11,500	비공개	
51	2026 시즌공연 City Of Joy 홍보물 제작	13,255	비공개	
52	2026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홍보물 제작	16,000	비공개	
53	2026 공주그림상점으로 홍보물 제작	30,000	비공개	
54	2026 공주생활문화축제 인쇄물 제작 및 전시 운영	15,360	비공개	
55	2026 재단 캐릭터를 활용한 숏폼 홍보영상 제작	20,680	비공개	
56	백제문화전당 브랜드 상설공연(가족극) 영상디자인 제작	18,140	비공개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제1항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추정가격 1천만원**을 말한다. 또한 제2항에서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그러나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2023년부터 2026년 감사일까지 현재 위 **【표】**와 같이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관련 규정을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직접생산증명서를 제출받지 않고, 56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요청하오니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계약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대한 발주 부적정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주의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표】 경관조명(일반조명 포함) 설치 관련 발주 및 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발주당시 계약종류	자격요건 (면허보유 등)
2023년	2023년 기획초대전(빛 공간과 구성전) 조명 오브제 임차	34,800	비공개	용역	도매·소매업 (조형물-직생 有)
2023년	2023년 공주문화재 야행 달빛 나린 제민천(야경) 경관조명 공사	54,400	비공개	공사	건설업 (행사대행-직생 有)
2023년	공주문화예술촌 갤러리 조명시설 설치	5,278	비공개	용역	전기공사업
2024년	(이월)2023 미래유산도시브랜딩 조명경관 조성 설치 용역	50,000	비공개	용역	제조업 (옥외조명-직생 有)
2024년	(이월)2023 미래유산도시브랜딩 조명경관 조성 전기설비 운영 용역	50,000	비공개	용역	전기공사업
2024년	문예회관 대공연장 조명시설 개선공사	18,734	비공개	공사	전기공사업
2024년	2024년 제민천 달콤거리 및 한옥마을 행사용 조명 설치·운영	48,279	비공개	용역	건설업 (행사대행-직생 有)
2024년	2024년 공주 문화유산 야행 불빛 내린 공주로 경관조명 설치 용역	35,000	비공개	용역	건설업 (행사대행-직생 有)
2025년	제민천 조명 설치 및 경관 조성 용역	14,894	비공개	용역	전기공사업
2025년	2025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산성 야간경관 조성 용역	55,000	비공개	용역	제조업 (옥외조명-직생 有)
2025년	공산성 야간경관 구조물 제작 및 설치	45,000	비공개	용역	제조업 (행사대행-직생 有)
2025년	2025 공주 국가유산 야행 달빛 아래 공주로 야간경관조명 설치	16,500	비공개	용역	전기공사업
2025년	밤마실야시장 무대, 조명, 경관조명 설치 및 운영	18,000	비공개	용역	개인사업자 (직생 無)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에 의하면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1)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 2)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 3)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 4)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 2)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공사 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다.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공사가 명백함에도 물품·공사 또는 용역·공사의 혼재된 계약으로 판단하여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그러나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위 【표】와 같이 2023년부터 2026년 감사일 현재까지 축제나 행사 등 추진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관조명(일반조명 포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물품·용역·공사의 명확한 구분 없이 통일되지 않은 방식으로 발주하여 관련 법령에 맞는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경관조경 설치사업 등이 시설물 설치가 주된 사업이라면 공사로 보아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업체와 추진하고, 운영·기획이 주된 사업이라면 용역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가능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와 추진하여야 한다. 즉 사업계획 수립 당시 계약목적물을 명확히 구분·발주하여 동일한 사업이 일관된 방식으로 계약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행사 및 공연 관련 계약체결 절차 부적정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시정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표】 행사 및 공연 관련 긴급 계약체결 현황

[단위 : 건]

연도	행사·공연 계약건수	행사·공연일과 계약체결일 간의 소요일수별 계약건수			
		행사·공연 후	행사·공연 당일	행사·공연 3일 전 (1일 ~ 3일)	행사·공연 10일 전 (4일 ~ 10일)
계	185	2	15	74	94
2023년	41	0	8	19	14
2024년	52	2	2	24	24
2025년	92	0	5	31	56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제3항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제5절 계약의 이행”에 의하면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 그러나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위【표】와 같이 행사·공연에 대한 계약체결을 진행하면서 통상적인 행사 및 공연에 행사 규모, 기간을 고려한 사업추진 소요 기간을 감안하여 볼 때 계약의 성립 없이 미리 특정 업체와 작업을 진행하여 행사·공연 당일에 계약한 사례가 2023년 8건, 2024년 2건, 2025년 5건이고, 심지어 2024년에는 행사·공연 진행 중에 2건을 계약하는 등 심각하게 계약 절차를 부적절하게 이행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는바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내부 지침 또는 계약절차 매뉴얼을 작성하여 전직원 교육(공유)을 실시하여 올바른 계약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무이자 계좌 개설에 따른 세입 확보 소홀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주의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무이자 계좌개설 현황

연도	계좌개설일	구 분	사업비 (천원)	은행	계좌번호	예상이자 (원)
	합계	20건				7,915,011
2023	2023-01-19	2023고마(위탁)	1,052,215	비공개	비공개	711,282
	2023-01-19	2023문예(위탁)	1,340,058	비공개	비공개	703,141
	2023-01-18	2023예술촌(위탁)	144,799	비공개	비공개	95,311
	2023-01-11	2023강북(위탁)	80,000	비공개	비공개	49,299
	2023-03-10	2023문화재야행(시비)	100,000	비공개	비공개	42,932
2024	2024-05-03	2024백제문화제(출연금)	3,000,000	비공개	비공개	512,152
	2024-03-26	2024공주시미션투어(대행)	22,000	비공개	비공개	8,074
	2024-03-13	2024문화유산야행(시비)	100,000	비공개	비공개	43,608
2025	2025-01-03	2025 문예(위탁)	1,793,180	비공개	비공개	987,264
	2025-01-03	2025 고마(위탁)	1,062,226	비공개	비공개	661,965
	2025-01-03	2025 출연금	3,716,149	비공개	비공개	2,045,656
	2025-03-14	2025 백제문화제	2,080,000	비공개	비공개	1,105,945
	2025-01-03	2025 예술촌(위탁)	176,532	비공개	비공개	102,896
	2025-04-21	2025 디지털유산(시비)	360,000	비공개	비공개	128,785
	2025-02-07	2025공산성미디어아트(시비)	900,000	비공개	비공개	533,869
	2025-03-21	2025 밤마실야시장(시비)	280,000	비공개	비공개	94,459
	2025-01-03	2025 강북(대행)	90,000	비공개	비공개	49,694
	2025-05-13	공산성미디어아트공모(대행)	20,000	비공개	비공개	2,855
	2025-05-23	공주국가유산야행 공모신청	15,000	비공개	비공개	988
	2025-03-06	2025 교육발전특구	60,000	비공개	비공개	34,836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국·도·비계좌 제외) / 예상이자 산출 : 잔액 × 0.001/365 × 경과일수(보통예금 기준금리 0.1% 적용)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출자출연금법」 제20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또한 「지방출자출연금법」 제3조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해당 기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세입 증대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또한, 예산편성 시 세입예산에는 이자 수입, 사업수입, 출연금, 출자금, 이월금 등이 포함되며, 출연금의 이자수익은 사업수익 - 출연금 이자수익(650-01) 항목으로 그 외 예금 등 이자수익은 영업외수익 - 예금이자수익(671-01), 기타이자수익(671-09) 항목 등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 「공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출자출연금법」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을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조례 제9조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공주시에 반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다만, 출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
- ⇒ 그러나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출연금 등의 자금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총 20건(2023년 5건, 2024년 3건, 2025년 12건)의 계좌에 대해 은행에 무이자 계좌 개설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통예금(입출금계좌) 기준금리 연 0.1%를 적용할 경우 발생 가능한 예상이자 약 7,915천 원(세전)의 세입 확보 기회를 상실하는 등 재단의 세입 증대 노력 및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26년은 무이자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개설)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이자 수입 등 재단의 세입 증대와 자금 운용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신용카드 등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관리 미흡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시정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구매카드¹⁾ 관리 현황

연도	연번	카드명	카드번호	결제계좌
2025	1	대표이사2184	비공개	비공개
	2	경영지원2272	비공개	
	3	경영지원2288	비공개	
	4	문예진흥2190	비공개	
	5	문화사업2217	비공개	
	6	공연기획2228	비공개	
	7	백제전당2248(출연금)	비공개	
	8	관광산업2251	비공개	
	9	문화도시센터2263(출연금)	비공개	
	10	24꿈의향연(연속)	비공개	비공개
	11	24꿈의무용단(연속)	비공개	비공개
	12	24시나브로(연속)	비공개	비공개
	13	24비단가람온길(연속)	비공개	비공개
	14	24종교평화(연속)	비공개	비공개
	15	25문화도시0863	비공개	비공개
	16	25공산성미디어8062	비공개	비공개
	17	25백제문화전당6462	비공개	비공개
	18	25야간관광0960	비공개	비공개
	19	25백제문화제2108	비공개	비공개
	20	25야행5851(국비)	비공개	비공개
	21	25야행7655(시비)	비공개	비공개
	22	25밤마실4805	비공개	비공개
	23	25공예주간7433	비공개	비공개
	24	25디지털유산3885	비공개	비공개
	25	25박동진판소리4360	비공개	비공개
	26	25지방소멸8843	비공개	비공개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 자지급수단(제로페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증빙제도(현 금영수증카드)

	27	25지역전시9151	비공개	비공개
	28	25꿈오케합동캠프9839	비공개	비공개
	29	하이패스(그랜저)9893	비공개	비공개
	30	하이패스(카니발)9903	비공개	
2026	1	대표이사4854	비공개	비공개
	2	경영지원6280	비공개	
	3	경영지원5235	비공개	
	4	문화예술센터5438	비공개	
	5	관광콘텐츠5281	비공개	
	6	문화공간5259	비공개	
	7	공연기획6836	비공개	
	8	문화도시센터9283(출연금)	비공개	
	9	하이패스(그랜저)1652	비공개	비공개
	10	하이패스(카니발)1644	비공개	
	11	26백제문화제7247	비공개	
	12	25백제문화전당6462	비공개	
	13	25문화도시0863	비공개	비공개
	14	26비단가람온길8268	비공개	비공개
	15	26종교평화5406	비공개	비공개
	16	26강북1918(대행)	비공개	비공개
	17	26백제문화전당7612	비공개	
	18	26호서극장0146	비공개	
	19	26의당유구2585	비공개	
	20	26박동진판소리5131	비공개	
	21	26야행(시비)9244	비공개	
	22	26스케치워크6341	비공개	
	23	26디지털페스타7858	비공개	
	24	26공산성9357	비공개	
	25	26문화도시8433	비공개	비공개
	26	26꿈의무용단2674	비공개	비공개
	27	26꿈오케7108	비공개	비공개
	28	26지역대표4853	비공개	비공개
	29	26야간관광7972	비공개	비공개
	30	26문예특성화3328	비공개	비공개
	31	26공연유통6466	비공개	비공개
	32	26야행(국비)7486	비공개	비공개
	33	26시나브로4673	비공개	비공개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25년 이전은 구매카드 관리 내역 없음)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는 출연기관은 본 지침의 적용을 받으며,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의 예산 집행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신용카드

계좌는 회계책임자의 책임하에 기관 명의로 개설하며,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 임직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하며,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또한, 발급된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등 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에 반드시 등재 및 지출원에게 통보(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하여, 지출원이 해당 기관의 모든 신용카드 등 구매카드 발급현황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등을 사용 후에는 사용금액을 명확히 확인하고, 예산회계시스템에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매출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신용카드영수증 전산화 추진기관은 전자영수증(사용자 성명)으로 처리 가능)하여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홈페이지 검색 등)은 매월 1회 분임재무관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 그러나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발급된 신용카드 등을 카드발급대장에 등재하여 지출원이 카드 발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2023년부터 2026년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등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지 않는 등 구매카드 발급 현황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후에는 매출표에 사용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여 카드 사용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매출표에 사용자가 기재되지 않거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자료상의 카드 사용자와 매출표 기재 사용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카드 사용 책임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내역은 대장으로 작성하여 분임재무관까지 보고·결재를 받고 있었으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2026년 이전까지 별도의 보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신용카드 사용내역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발급된 신용카드 등 구매카드를 카드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발급·해지 등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구매카드 발급현황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라며,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자료의 카드 사용자와 신용카드 사용내역²⁾ 보고 자료 및 매출표의 사용자가 일치되도록 하여 카드 사용 책임이 명확히 관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카드 등 사용내역 보고 사항 : 사용일자, 사용금액, 사용처, 실사용자(직급, 성명), 내용(품의 적요) 등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세입예산 편성·관리 및 예산변경 절차 이행 소홀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주의·개선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연간 수입(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계	14,862,010	19,316,922	25,647,421	15,818,250	
출연금	4,199,266	6,716,149	6,916,149	7,353,834	시비
민간위탁금	2,730,178	2,707,890	3,179,938	3,291,824	시비
대행사업비	-	7,567,000	12,919,000	4,906,592	시비
보조금	6,806,656	292,000	638,000	-	국·도·시비
기타수입	256,245	159,549	412,636	-	공연, 기부금, 이자수입 등
이월액	869,664	1,874,333	1,581,698	266,000	자체수입금(잉여금), 출연금, 위탁금 등

※ 출처 : 수감기관 예산 결산서 및 예산의결안

○ 예산 변경(이용·전용·변경 등)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횟수	예산액	횟수	예산액	횟수	예산액	횟수	예산액
계	118	2,254,026	99	925,354	79	468,753	2	100,000
출연금	28	364,474	24	218,771	25	218,984	-	-
민간위탁금	14	59,126	17	289,305	9	60,120	-	-
대행사업비, 보조금 등	76	1,840,426	58	417,278	45	189,649	2	100,00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집행 기준」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지출경비를 산정하고 관련 자료에 의거 정확하게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특별법 등의 위임에 따라 별도 예산편성기준을 적용받는 기관 외에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함이 기본원칙으로 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교부하고, 출자출연기관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주관부서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자본금)에 편입하거나 또는 차입금변제에 우선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예산이 확정된 후 경영목표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이용·전용·변경 등)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또는 교부결정서 등에 따른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그러나 2023년부터 2026년 감사일 현재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예산을 출연금, 민간위탁금, 대행사업비, 보조금 등으로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 구분하여 편성·관리한 사실이 있으며, 결산 잉여금의 사용에 있어 사업주관부서인 문화예술과와 사전 협의한 문서(공문 등)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세입 재원의 관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예산 변경사항은 사전에 시, 이사회, 대표이사 등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사업기간 종료일인 2023. 12. 31. 불과 몇일 전인 12. 26.과 12. 28.에 일괄적으로 예산변경승인이 이루어지거나, 용역비가 예산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예산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함에도 계약 이후에 용역비 지급을 사유로 하여 예산변경을 요청하

였으며, 행사기간이 2025. 10. 12.까지인 사업의 예산변경 승인이 행사가 종료된 10. 16.에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예산변경 절차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결산 잉여금 활용 시 공식적인 사업주관부서와의 협의 및 이사회 승인을 통하여 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세입예산은 정확하게 수입을 산정하고 규정에 따른 과목체계 및 편성기준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 또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절차이행이 사전(원인행위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등을 철저히 하는 등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제 목】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운영 소홀
-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 【행 정 상】 주의
- 【재 정 상】 없음
- 【지적내용】

가. 현 황

○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현황(2023. 1. 1. ~ 2026. 4. 30.)

구분	회계관직명	직무대리기간	대상자		대리지정자	
			직위	성명	직위	성명
2023	분임재무관	2023. 10. 13. ~ 10. 31.	총괄본부장	비공개	문화관광센터장	비공개
	분임재무관	2023. 11. 1. ~ 별도 명령 시	총괄본부장	비공개	문화관광센터장	비공개
2024	지출원	2024. 7. 9. ~ 7. 10.	경영지원실장	비공개	문화도시센터장	비공개
	지출원	2024. 7. 10.	경영지원실장	비공개	문화사업팀장	비공개
	지출원	2024. 8. 5. ~ 8. 6. / 8. 9.	경영지원실장	비공개	문화도시센터장	비공개
	지출원	2024. 8. 29.	경영지원실장	비공개	관광산업팀장	비공개
	지출원	2024. 8. 30.	경영지원실장	비공개	문화사업팀장	비공개
	지출원	2024. 10. 15.	경영지원실장	비공개	문화도시센터장	비공개
	지출원	2024. 10. 21. ~ 10. 22.	경영지원실장	비공개	문화사업팀장	비공개
	지출원	2024. 11. 1.	경영지원실장	비공개	문화도시센터장	비공개
	지출원	2024. 11. 13.~11. 15.	경영지원실장	비공개	문화도시센터장	비공개
	지출원	2024. 12. 13.	경영지원실장	비공개	문화도시센터장	비공개
2025	지출원	2024. 12. 24.	경영지원실장	비공개	문화도시센터장	비공개
	지출원	2025. 8. 4. ~ 8. 8.	경영지원실장	비공개	문화공간센터장	비공개

○ 회계관계임직원 공석 현황(1일 8시간 이상)

연도	직위(직급)	성명	근태구분	해당기간	비고
2023	대표이사	비공개	연차	2023-01-05(09:00) ~ 2023-01-05(18:00)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	비공개	연차	2023-02-17(09:00) ~ 2023-02-17(18:00)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	비공개	연차	2023-03-02(09:00) ~ 2023-03-02(18:00)	
	대표이사	비공개	관외출장	2023-03-10(09:00) ~ 2023-03-11(18:00)	통영
	총괄본부장 직무대리	비공개	관외출장	2023-03-16(09:00) ~ 2023-03-16(18:00)	서울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	비공개	관외출장	2023-03-22(09:00) ~ 2023-03-22(18:00)	서울
	총괄본부장 직무대리	비공개	관외출장	2023-03-23(09:00) ~ 2023-03-23(18:00)	서울
	총괄본부장 직무대리	비공개	관외출장	2023-04-05(10:30) ~ 2023-04-06(16:00)	서울

	대표이사	비공개	관외출장	2023-04-20(08:30) ~ 2023-04-20(21:00)	서울
	대표이사	비공개	연차	2023-04-21(09:00) ~ 2023-04-21(18:00)	
	대표이사	비공개	연차	2023-04-28(09:00) ~ 2023-04-28(18:00)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	비공개	연차	2023-04-28(09:00) ~ 2023-04-28(18:00)	
	대표이사	비공개	연차	2023-05-12(09:00) ~ 2023-05-12(18:00)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	비공개	관외출장	2023-05-16(09:00) ~ 2023-05-17(18:00)	부산
	총괄본부장 직무대리	비공개	관외출장	2023-05-16(09:00) ~ 2023-05-17(18:00)	부산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	비공개	관외출장	2023-05-25(09:00) ~ 2023-05-25(18:00)	세종, 논산
	대표이사	비공개	연차	2023-05-26(09:00) ~ 2023-05-26(18:00)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	비공개	연차	2023-06-15(09:00) ~ 2023-06-15(18:00)	
	총괄본부장 직무대리	비공개	연차	2023-06-15(09:00) ~ 2023-06-16(18:00)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	비공개	연차	2023-06-30(09:00) ~ 2023-06-30(18:00)	
	총괄본부장 직무대리	비공개	연차	2023-07-14(09:00) ~ 2023-07-14(18:00)	
	대표이사	비공개	관외출장	2023-07-14(09:00) ~ 2023-07-15(18:00)	단양, 영월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	비공개	병가	2023-08-01(09:00) ~ 2023-08-01(18:00)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	비공개	연차	2023-08-16(09:00) ~ 2023-08-16(18:00)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	비공개	연차	2023-08-23(09:00) ~ 2023-08-23(18:00)	
	대표이사	비공개	연차	2023-08-25(09:00) ~ 2023-08-25(18:00)	
	대표이사	비공개	연차	2023-09-04(09:00) ~ 2023-09-04(18:00)	
	대표이사	비공개	관외출장	2023-09-07(09:00) ~ 2023-09-08(18:00)	부산 영도
	총괄본부장 직무대리	비공개	공가	2023-09-14(09:00) ~ 2023-09-14(18:00)	
	총괄본부장 직무대리	비공개	관외출장	2023-09-15(09:00) ~ 2023-09-15(18:00)	논산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	비공개	관외출장	2023-10-23(09:00) ~ 2023-10-24(18:00)	여수
	총괄본부장 직무대리	비공개	연차	2023-10-24(09:00) ~ 2023-10-31(18:00)	
	대표이사	비공개	관외출장	2023-11-29(09:00) ~ 2023-11-29(18:00)	예산
2024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	비공개	관외출장	2024-04-16(09:00) ~ 2024-04-17(18:00)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	비공개	공가	2024-05-27(09:00) ~ 2024-05-27(18:00)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	비공개	관외출장	2024-05-31(09:00) ~ 2024-06-01(18:00)	
	대표이사	비공개	관외출장	2024-06-03(12:00) ~ 2024-06-04(18:00)	
	대표이사	비공개	연차	2024-08-14(09:00) ~ 2024-08-14(18:00)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	비공개	관외출장	2024-08-29(09:00) ~ 2024-08-30(18:00)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	비공개	연차	2024-10-15(09:00) ~ 2024-10-15(18:00)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	비공개	관외출장	2024-11-13(09:00) ~ 2024-11-15(18:00)	
	대표이사	비공개	관외출장	2024-12-10(09:00) ~ 2024-12-11(18:00)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	비공개	연차	2024-12-24(09:00) ~ 2024-12-24(18:00)	
2025	대표이사	비공개	연차	2024-12-30(09:00) ~ 2024-12-31(18:00)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	비공개	병가	2025-02-20(09:00) ~ 2025-02-20(18:00)	
	대표이사	비공개	관외출장	2025-02-21(09:00) ~ 2025-02-21(18:00)	
	대표이사	비공개	관외출장	2025-02-27(09:00) ~ 2025-02-27(18:00)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	비공개	연차	2025-04-08(09:00) ~ 2025-04-08(18:00)	
	대표이사	비공개	관외출장	2025-04-17(09:00) ~ 2025-04-18(18:00)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	비공개	연차	2025-05-02(09:00) ~ 2025-05-02(18:00)	
	대표이사	비공개	연차	2025-06-10(09:00) ~ 2025-06-10(18:00)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	비공개	병가	2025-06-18(09:00) ~ 2025-06-18(18:00)	
	대표이사	비공개	관외출장	2025-06-27(09:00) ~ 2025-06-27(18:00)	
	대표이사	비공개	관외출장	2025-07-09(09:00) ~ 2025-07-10(18:00)	
	대표이사	비공개	연차	2025-07-16(09:00) ~ 2025-07-16(18:00)	
	대표이사	비공개	관외출장	2025-08-27(09:00) ~ 2025-08-27(18:00)	
	대표이사	비공개	관외출장	2025-08-28(09:00) ~ 2025-08-29(18:00)	
	대표이사	비공개	국외출장	2025-09-08(09:00) ~ 2025-09-11(18:00)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	비공개	관외출장	2025-09-11(09:00) ~ 2025-09-12(18:00)	
	대표이사	비공개	관외출장	2025-09-19(09:00) ~ 2025-09-19(18:00)	
	대표이사	비공개	관외출장	2025-10-22(09:00) ~ 2025-10-23(18:00)	
	대표이사	비공개	연차	2025-10-28(09:00) ~ 2025-10-28(18:00)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	비공개	연차	2025-10-31(09:00) ~ 2025-10-31(18:00)	

	대표이사	비공개	관외출장	2025-11-12(09:00) ~ 2025-11-12(18:00)	
	대표이사	비공개	관외출장	2025-11-28(09:00) ~ 2025-11-28(18:00)	
	대표이사	비공개	관외출장	2025-12-05(09:00) ~ 2025-12-05(18:00)	
	대표이사	비공개	관외출장	2025-12-09(09:00) ~ 2025-12-09(18:00)	
	대표이사	비공개	연차	2025-12-24(09:00) ~ 2025-12-24(18:00)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	비공개	연차	2025-12-24(09:00) ~ 2025-12-24(18:00)	
	대표이사	비공개	연차	2025-12-26(09:00) ~ 2025-12-26(18:00)	
	대표이사	비공개	연차	2025-12-31(09:00) ~ 2025-12-31(18:00)	
2026	대표이사	비공개	관외출장	2026-02-20(09:00) ~ 2026-02-20(18:00)	서울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	비공개	공가	2026-03-06(09:00) ~ 2026-03-06(18:00)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	비공개	관외출장	2026-03-17(09:00) ~ 2026-03-17(18:00)	
	대표이사	비공개	관외출장	2026-03-26(09:00) ~ 2026-03-26(18:00)	서울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	비공개	연차	2026-03-27(09:00) ~ 2026-03-27(18:00)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	비공개	관외출장	2026-04-02(09:00) ~ 2026-04-03(18:00)	
	대표이사	비공개	관외출장	2026-04-13(09:00) ~ 2026-04-14(18:00)	강릉 영월 등

※ 재단 별도 문서시스템 자료 재구성

나. 위법·부당사항

- 「공주문화관광재단 예산회계규정」 제6조(회계책임자 및 회계관계임직원 지정) 제1항에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회계책임자 및 그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관계임직원을 지정·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며 회계관계임직원은 대표이사, 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별표1] (제6조제1항 관련)

회계책임자 및 회계관계임직원

구분			직위	직무
회계책임자			대표이사	회계사무총괄
회계관계 임직원	재산관리원		대표이사	재산관리업무총괄
	재무담당 (재무관)	총괄	대표이사	지출원인행위업무총괄
		분임	경영지원실장	
	수입담당 (수입징수관)	총괄	대표이사	수입업무총괄
		분임	경영지원실장	
	지출담당 (지출원)		경영지원팀장	지출업무총괄
	일상경비취급담당		경영지원팀장	
	유가증권관리담당		경영지원팀장	유가증권업무총괄
	물품관리담당		경영지원팀장	물품관리업무총괄
	자산관리담당		경영지원팀장	자산관리업무총괄

- 같은 규정 제2항에는 회계관계직원이 출장·휴가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장은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하며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회계관계임직원에 해당하는 대표이사, 경영지원실장 및 경영지원팀장이 연가·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리자를 문서로 지정하여 회계업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러나 2023. 1. 1.부터 2026. 4. 30.까지의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직무대리 지정 건수는 2023년 2건(기간 미정), 2024년 1건(17일), 2025년 1건(5일)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 중 회계관계임직원의 1일(09:00~18:00) 이상 부재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3년 46일, 2024년 19일, 2025년 35일, 2026년 9일 동안 회계관직 공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붙임 참조], 직무대리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재 중인 회계관계임직원 명의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되는 등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회계관계임직원 부재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직무대리자 지정을 통하여 지출 등 회계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운영하시어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근무복 등 피복비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시정

【재 정 상】 환수(4,345천원)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천원)

건명	구입내역	지출액	지급일	거래처	지출과목
공주문화재단 임직원 근무복 구매 비용 지급	197,500원 * 22개	4,345	2022. 12. 6.	▲▲▲▲	복리후생비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작업복·위생복·근무복 등 피복비는 업무 특성상 제복(작업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그러나 공주문화관광재단은 업무상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행사 시 민간인과 직원 간 식별, 고객 서비스 향상 및 기관 이미지

제고, 난방비 절감 등을 사유로 임직원 22명의 근무복을 구입하였으며, 구입한 근무복 또한 규정상의 작업복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일반 방한용 의류(검정색 경량패딩)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복비 집행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관련자 의견

- 해당 근무복은 동절기 야외 행사 및 현장 지원 업무수행 시 통일성 있는 복장 착용을 통해 임직원 식별과 시민 응대를 원활히 하고자 활용하였으며 행사 현장에서는 사원증을 함께 패용하였다면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의견에 대한 판단

- 임직원 식별, 시민 응대는 피복비 집행 대상인 업무상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없으며, 더욱이 구입한 경량패딩(검정색)에는 재단 로고 등 임직원 식별을 위한 어떠한 표시도 확인되지 않는바 재단에서 제시한 의견은 인정하기 어렵다.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집행대상이 아님에도 부적정하게 집행한 피복비 4,345천원을 즉시 환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피복비 집행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 【행 정 상】 주의
- 【재 정 상】 없음
- 【지적내용】

가. 현 황

○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건 대상자 명단 미첨부

(단위 : 원)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대상	사용처	집행금액	과목
2023-02-28	2023년 공주문화관광재단 임시이사회 개최에 따른 업무추진비	공주문화관광재단 이사회 임원 등 21명	A	551,000	시책

○ 주말 사용 업무관련성 증빙자료 미흡

(단위 : 원)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대상	사용처	집행금액	과목
2023-05-20	공주생활문화주간 관계자들과 사업간담에 따른 업무추진비 지급	공주생활문화주간 관계자 등 10명	B	21,000	시책
			C	76,000	시책
2024-01-27	축하화환 구입((사)B 공주지회장 이·취임식)	(사)B 공주지회장	D	60,000	시책
2024-08-24	(재)공주문화관광재단 2024년 상반기 시민문예아카데미 창작발표회 격려를 위한 업무추진비 사용 결의	2024년 상반기 시민문예아카데미 창작발표회 추진 담당 직원 등(10인)	E	24,000	기관
			F	14,500	기관

○ 화환 · 화분 제공 부적정

(단위 : 원)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대상	사용처	집행금액	과목
합계	20건			1,700,000	
2023-04-21	유관기관 축하화환 구입	한국★★문화단체총연합회 공주시회장 ○○○ 개인전	G	100,000	기관
2023-05-12	유관기관 축하화환 구입 업무추진비	☆☆☆☆☆ (언론사 창간)	G	100,000	기관
2023-06-07	유관기관 축하화환 구입 업무추진비 지급((사)공주시QQ협의회_DMO사업단)	(사)공주시QQ협의회 _DMO사업단	G	100,000	기관
2023-06-26	유관기관 축하화환 구입 업무추진비 지급	한국KK협회 공주시 부 전시 개최	G	100,000	시책
2023-08-11	유관기관 축하화환 구입비용 지급결의(공주시 기자협회장 취임)	공주시 JJ협회장 취 임	D	60,000	시책
2023-10-13	유관기관 축하화환 구입 업무추진비 (2023 공주국제미술제 개최)	HH미술관	D	60,000	시책
2023-10-20	유관기관 부조화환 구입 업무추진비 (보은장례식장)	ㄱㄱ일보 ●●● 국장	D	80,000	시책
2023-10-26	유관기관 축하화환 구입 업무추진비 비용 지급 결의(제43회 G 공주시부 정기전)	제43회 G 공주시부 정기전	G	60,000	시책
2023-10-26	유관기관 축하화환 구입 업무추진비	플루티스트 ○○○○	G	100,000	시책
2023-10-26	유관기관 직원 빙모상 화환 구입 업무추진비	ㄴㄴ일보 ◇◇◇◇ 국장	G	100,000	시책
2023-10-30	유관기관 축하화환 구입 업무추진비	DD(공주국제미술제 개최)	D	60,000	시책
2023-11-21	유관기관 축하화환 구입 업무추진비	DD(공주시 언론인협 회 창립식)	D	60,000	시책
2023-12-28	공주문화관광재단 종무식 대표이사 축하화환 구입을 위한 부서업무비	전 직원 (기간제근로자 포함)	D	50,000	부서 운영
2024-01-12	파견근무 직원 원소속 복귀에 따른 송별회 물품 구입	파견 근무 직원(3인)	D	150,000	기관
2024-01-27	축하화환 구입 ((사)B 공주시회장 이.취임식)	(사)B 공주시회장	D	60,000	시책
2024-02-21	공주문화관광재단 직원(◆◆◆감독 외조모) 근조 화환	◆◆◆감독 외조모	D	60,000	기관
2024-04-12	공주·부여·청양 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축하 화환 구입	공주·부여·청양 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G	100,000	시책
2024-06-27	유관기관(공주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 취임에 따른 축하화환 구입	시의회 의장 □□□, 부의장 ■■■(2인)	D	200,000	기관
2024-09-27	유관기관(눈 갤러리) 개관전 개최에 따른 축하화환 구입	눈 갤러리 대표 ▲ ▲▲	D	50,000	시책
2024-10-10	언론기관(ㄸㄸ) 창간에 따른 축하화환 구입을 위한 업무추진비	ㄸㄸ 대표 △△△(1 인)	D	50,000	시책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법·부당사항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 그러나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업무추진비 집행 및 증빙 관리 전반에서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① 사용용도 불명확 및 증빙서류 첨부·사용내역 공개 소홀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 시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또는 주소)과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공개항목 :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및 비목)은 매월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관련성이 낮은 시간대(23시 ~ 익일 6시 등) 및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사업·행사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예: 오찬, 만찬, 축하 이유 등)를 증빙서류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행사 운영 관련 업무추진비 지출’, ‘간담을 위한 업무추진비’, ‘유관기관 축하화환 구입’ 등과 같이 집행 목적을 포괄적으로 기재하였으며, 대상자를 ‘전 직원(기간제근로자 포함)’, ‘재단 임직원’ 등으로 일괄 기재하여 실제 집행인원을 확인 할 수 없는 등 증빙서류에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건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집행인원 대비 집행액을 대조한 결과 1인당 집행액이 2천원 미만으로 현저히 낮아 실제 집행인원과의 불일치가 의심되는 건이 총 39건 확인되었다.

아울러 건당 50만 원을 초과한 1건 및 주말(토·일)에 집행된 3건에 대해서는 대상자 명단, 출장명령서 등 필수적인 객관적 증빙서류의 첨부 없이 집행된 사실이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일부 사용내역만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2025년 286건 중 207건, 2026년 65건 중 38건), 2026년 2월까지의 공개항목의

사용시간이 누락되어 공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카드사용 의무 및 사용자·사용시간 관리 미흡

- 업무추진비는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신용카드 등³⁾을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사용금액을 명확히 확인하고 예산회계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집행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그러나 화환 구입, 식사 및 다과 구매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집행한 건이 총 17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용자와 사용시간에 대한 확인·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추진비 집행 책임자와 통상적인 업무시간 내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화환·화분 제공기준 위반

- 업무추진비로 집행 가능한 화환·화분의 제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유관기관장의 퇴임 또는 전·출입, 각종 국경일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 개소 등 의례적 경우로 한정되며,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취임 축하 목적의 화분 제공은 가능하나, 부의장·상임위원장 및 일반 의원에게는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축의·부의금품으로서 화환 제공은 소속 상근직원, 해당 지방의회 의원, 관할 구역 내 업무 관련 유관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 임직원의 본인 및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에 한정된다.
 - 그러나 전시·공연 개최, 민간기업 등 이취임식, 언론사 창간, 종무식, 파견직원 송별회 등 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로 화환·화분을 제공하였으며, 직원의 외조모상 및 언론사 기사를 대상으로 부의금품 성격의 화환을 제공하는 등 허용된 집행 범위를 벗어나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④ 업무추진비 자체 세부지침 미수립

- 2026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기준」에는 업무

3) 신용카드 등 : 클린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카드

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2026년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고, 관련 규정 연찬을 철저히 하여 업무추진비가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유사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공공요금 연체료 지출 부적정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시정

【재 정 상】 변상(51,240원)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원)

건명	사용기간	집 행 액	연체료·가산금	비고
합계	2건		51,245	
문예회관 전기요금(12월) 납부	2025.11.10.~12.9.	7,336,480	48,537	민간위탁
아트센터고마 전기요금 5월 청구분 납부	2026.3.25.~4.24.	4,689,600	2,708	민간위탁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예산은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지자체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공요금 납부 시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 활용, 선납·일괄납부 등을 통해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공주문화관광재단 예산회계규정」 제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관계 법령·예산 및 제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관계 규정 및 예산을 위반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책임이 있다.

○ 따라서 회계관계직원은 공공요금이 정해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부담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그러나 공주문화관광재단은 전기요금 2건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연체료 및 가산금 51,245원을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기관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관련자 의견

○ 고의성은 없었으나 시설 담당자의 납부 지연으로 인해 공공요금 연체료가 발생하였고 예산으로 이를 집행한 사실에 대해 수용하면서, 재발방지 대책 및 조치사항으로 예산 보전, 납부방식 개선(자동이체, 인터넷 빌링), 직원 직무교육 강화를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기관 예산으로 지출된 연체료 및 가산금 51,240원을 변상 조치하시고, 재단에서 제시한 재발방지 대책 및 조치계획을 추진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사무기기 임차 운영 등 예산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시정·개선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원)

건명		연도	집행액	업체명	비고
		합계	209,494,040		
재단 사무실			68,685,200		
1	공주문화관광재단 사무실 칼라복합기 및 프린터기 임차	2023	11,760,000	비공개	출연금
2	2024 공주문화관광재단 사무실 칼라복합기 및 프린터기 임차	2024	11,760,000	비공개	
3	2025 공주문화관광재단 사무실 칼라복합기 및 프린터기 임차	2025	11,760,000	비공개	
4	2026 공주문화관광재단 직원 사무실용 컬러 복합기 임차	2026	16,800,000	비공개	
5	2023 공주문화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 사무기기 임대	2023	4,171,200	비공개	
6	2024년도 공주문화관광재단 사무PC 임차	2024	7,299,600	비공개	
7	2024 꿈의오케스트라 공주 운영사업 사무기기 임차	2024	2,270,000	비공개	
8	2025년 홍보마케팅팀 기간제근로자 PC 임차	2025	2,864,400	비공개	
공주문예회관			27,324,000		
9	2023 공주문예회관 컴퓨터 및 복합기 임차	2023	3,300,000	비공개	위탁금 (문예회관)
10	2024 공주문예회관 컴퓨터 및 복합기 임차 결의	2024	4,752,000	비공개	
11	2025 공주문예회관 컴퓨터 및 복합기 임차	2025	9,504,000	비공개	
12	2026년 공주문예회관 사무기기 임차	2026	9,768,000	비공개	
문화도시, 어디쉐어(디자인공유공간)			54,086,760		
13	2023 법정문화도시 직원 사무기기 임대	2023	6,811,200	비공개	대행사업금 (문화도시)
14	2024 문화도시 직원 사무기기 임차 결의	2024	8,329,200	비공개	
15	2025 문화도시 직원 사무기기 임차	2025	5,214,000	비공개	
16	2023 문화공간 어디쉐어 디자인공유공간 컴퓨터 및 복합기 임차	2023	4,006,310	비공개	
17	2024 문화공간 어디쉐어 디자인공유공간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복합기 임차	2024	8,643,350	비공개	
18	2024 문화공간 어디쉐어 디자인공유공간 가구 임차	2024	3,878,700	비공개	
19	2025 디자인공유공간 운영을 위한 컴퓨터 및 복합기 임차	2025	8,355,600	비공개	
20	2026 문화공간 어디쉐어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사무기기 임차	2026	8,848,400	비공개	
백제문화전당			59,398,080		
21	백제문화전당 임시사무실 사무기기 임차	2025	16,711,200	비공개	대행사업금 (백제문화전당)
22	백제문화전당 임시사무실 사무집기 임차	2025	21,343,440	비공개	
23	백제문화전당 사무실 사무집기 임차	2026	21,343,440	비공개	

※ 수감기관 제출자료(계약 현황) 재구성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일반운영비는 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적·소모적 경비에 한하여 편성·집행하여야 하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은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일 기준에서는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물품의 내용연수 및 취득예상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공주문화관광재단 물품관리규정」에는 물품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매년 물품의 취득과 사용 및 처분 등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물품의 사용빈도, 재고수준, 가격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수준량의 재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재물조사를 통해 불요불급품의 구매여부 및 절감방안을 검토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그러나 공주문화관광재단은 물품의 내용연수 및 사용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상시적 사용이 명백한 PC, 복합기, 프린터, 가구 등 사무기기 및 집기에 대하여 자산취득비로 취득·관리하지 아니하고, 일반운영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를 지급하였다. 그 결과, 해당 물품의 취득가액 대비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사무집기에 대하여는 임대차 계약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서상에 소유권 이전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임차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는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재정 운영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사후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예산 집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재단의 사무기기 및 집기(가구)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 자산취득 물품에 대하여는 재단 물품관리 규정에 따라 자산으로 등재하여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시정)

- 향후 지속적·상시적 사용이 명백한 물품에 대하여는 자산취득비로 편성·집행(민간위탁·대행사업은 사업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물품수급관리계획 미수립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주의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2023년~ 2026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

나. 위법·부당사항

○ 「공주문화재단 물품관리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재단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총괄하고 그 배치에 따라 각 부서의 장이 출납보관하게 하여, 관리는 경영지원실장이 담당하되 주관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분담하게 하고 같은 규정 제6조 각호에 장부를 비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제7조 경영지원실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매년 물품의 취득과 사용 및 처분 등 물품수급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공주문화관광재단은,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물품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불필요한 구매를 억제하고 보유(운용, 재고) 물품을 조사하여 예산낭비를 예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작성하여 관리하지 않고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다. 관련자 의견

- 향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물품의 취득·사용·처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라. 의견에 대한 판단

- 의견없음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공주문화재단 물품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차량 임차계약 부적정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주의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금액 : 원)

부서명	차종 (차량번호)	임차료	임차일자	임차목적	상호 (대표자)
경영지원팀	그랜저 HEV 익스클루시브 (***호 ****)	10,107,500	'26.2.13.~ '26.12.31.	공주문화재단 출장 등 업무용 차량 임차	☐
		11,400,000	'25.1.1. ~ '25.12.31.		☐
		11,400,000	'24.1.1.~ '24.12.31.		☐
		10,450,000	'23.2.1.~ '23.12.31.		☐

나. 위법·부당사항

- 「공주문화관광재단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7조 차량의 구매 및 임차에 따르면 공용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 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의 특성상 임차 기간이 3년 이하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표이사의 허가를 득하여 임차할 수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물품이나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 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어 같은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러나 공주문화관광재단은 차량을 임차하면서 계약기간을 당초 추진계획과 다르게 계약기간을 3년 이하(1년씩)로 하여 금액을 낮추어 수의계약하는 등 차량 임차계약을 부적정하게 수행한 사실이 있다.

다. 관련자 의견

○ 2023년 업무용 차량 임차 추진계획에는 해당 차량의 임차기간을 2023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36개월로 하고, 총 소요예산을 34,200,000원으로 산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또한 2023년 업무용 차량 임차 시행 및 계약 결의 문서에도 차량의 총 계약기간은 36개월, 총 계약금액은 34,200,000원이며, 회계연도 기준 계약금액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당초 추진계획과 다르게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총 계약금액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임의 분할하여 추진한 것은 아니며, 당초 계획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구분하여 집행한 사항입니다.

○ 향후 차량 임차계약 추진 시에는 총 계약기간 및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과 계약방법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 업무용 차량 임차 계획(안) 일부발췌

공주문화관광재단 업무용 차량 임차 계획(안)

◆ 공주문화관광재단 업무용 차량 임차를 위해 출장 시 활용하여 출장 여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차량을 임차하고자 함.

1 임차배경 및 근거

- 재단 업무용 차량 임차를 통해 신속한 외부 업무 처리와 업무 효율성 증가 필요
-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차량의 임차 운영)

2 재단 차량관리규정(차량의 구매 관리) 일부 요약

제7조(차량의 구매 및 임차) ① 공용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용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 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의 특성상 임차기간이 3년 이하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대표이사의 허가를 거쳐 임차를 할 수 있다.

제8조(차량관리) 재단의 모든 차량(임차, 구매)은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손사고, 차량손해) 및 책임보험을 필수 가입하여야 한다.
단, 직권 누무나 운행할 수 있는 년령으로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임차개요

- 차 량 명 : 그랜저 HEV 익스클루시브
- 임차기간 : 2023년 2월 ~ 2026년 2월 (36개월)
- 임차업체 : 레드캡투어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5항 나목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
- 임차조건 : 종합보험, 정기검사, 순회점검, 긴급출동, 대체차량제공 등
- 보험내역 : 만26세 이상, 대인 2천, 대물 5억, 자상 2억/3천 등

4 소요예산

- 36개월 총 소요예산 : 금34,200,000원(금삼천사백이십만원)
- 세부산출내역 : 월 금950,000원(금구십오만원) × 36개월
- 2023년 소요예산 : 금10,450,000원(금일천만사십오만원)
- 세부산출내역 : 월 금950,000원(금구십오만원) × 11개월
- 예산과목 : 공주문화관광재단-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5 행정사항

- 공주문화관광재단 업무용 차량 임차 계약결의 진행 : 2023. 1. 19.
- 공주문화관광재단 업무용 차량 출고 진행 : 2023. 2. 1.까지

라. 의견에 대한 판단

- 임의로 분할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을 1년 단위로 나누어 진행한 점과 임차계약 총액이 수의계약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은 명백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주문화관광재단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항임.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주문화관광재단 공용차량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총괄 관리용역 발주 부적정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주의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금액 : 천원)

사업명	사업금액	사업기간	계약상대자	비고
2025 공산성 미디어아트 연출 및 운영 용역	825,000	2025.07.07.~ 2025.12.31.	비공개	
2025 공산성 미디어아트 총괄 기획 및 관리 용역	35,000	2025.06.10.~ 2025.12.31.	비공개	
제71회 백제문화제 무대시스템 설치 및 운영 용역	350,000	2025.09.26.~ 2025.12.31.	비공개	
제71회 백제문화제 웅진판타지 아 공연 감독단 운영	22,000	2025.09.29.~ 2025.12.31.	비공개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공주문화관광재단 예산회계규정」 제61조에 따르면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서 및 설계서 등 기타 관계서류에 의해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감독하고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는 발주부서의 팀장이 행한다고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 제5호 계약담당자는 용역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럼에도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2025 공산성 미디어아트 연출 및 운영 용역」 외 1개의 용역을 추진하면서 과업지시서상에 기재된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용역을 추가로 발주하였고, 준공계의 근거로 제출된 완료보고서에도 성과 사진이 중복으로 제출한다거나 주요 연출진이 중복으로 참여한 사진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소홀한 사실이 있다.

다. 관련자 의견

- 의견없음

라. 의견에 대한 판단

- 의견없음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주문화관광재단 예산회계규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검토 부적정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주의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금액 : 천원)

사업명	사업금액	사업기간	계약상대자	비고
백제문화전당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설치 운영	1,970,700	2025.09.26.~ 2025.12.31.	(대표) ㄹ (공동) ㄷ (공동) ㄱ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르면 물품·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다만 단순 물품구매나 개별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해당 계약제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분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 그럼에도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성능과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는 단순 물품구매(프로젝터, 스피커, PC 등)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 예산을 낭

비하였고 개별법에 의한 전문공사(전기, 통신, 소방 등)를 분리하지 않아
공사품질에 직결되는 시공능력과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다. 관련자 의견

- 의견없음

라. 의견에 대한 판단

- 의견없음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대
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 및 계
약 단계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가설건축물축조 관리 소홀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시정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금액 : 천원)

신고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건축면적	연면적	존치기간	지적내용	비고
2010-시민봉사과-가설 건축물신고-34	재단법인백제문화재 추진위원회	웅진동 ***	4,000	4,000	‘10.10.20	존치기간만료	
2010-시민봉사과-가설 건축물신고-36	재단법인백제문화재 추진위원회	웅진동 ***	124	124	‘10.10.20	존치기간만료	
2010-시민봉사과-가설 건축물신고-45	(재)백제문화재조직 위원회	웅진동 ***	630	630	‘10.10.30	존치기간만료	9개동

나. 위법·부당사항

○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시장의 신고 후 착공하여야 하며, 신고한 가설건축물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근거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횡수별 3년의 범위에서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존치를 완료한 가설건축물은 연장을 필요로 할 시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행정기관에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 신청 없이 기간이 경과되면 불법건축물로 간주 된다.

- ⇒ 그러나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상기와 같이 가설건축물 3건을 설치신고하고 이를 연장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고, 부지 내 설치된 건축물이 기신고 된 신고필증과 일치하지 않아 시설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다. 관련자 의견

- 의견없음

라. 의견에 대한 판단

- 의견없음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신고된 가설건축물을 연장 또는 취소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착공신고 시 제출서류 검토 소홀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주의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금액 : 원)

사업명	사업금액	사업기간	계약상대자	비고
공주문화관광재단 사무실 리모델링	8,900,000	2024.07.24.~ 2024.08.20.	비공개	
공주문화관광재단 사무실 리모델링 통신공사	5,566,000	2024.07.24.~ 2024.08.06.	비공개	
아트센터고마 1층 수장고 리모델링공사	11,200,000	2024.07.08.~ 2024.07.28.	비공개	
분수대 배수펌프 간선 전기공사	6,500,000	2024.07.08.~ 2024.08.04.	비공개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감독, 「공주문화관광재단 예산회계규정」 제61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럼에도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공주문화관광재단 사무실 리모델

링」 외 3건 개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사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한 사실이 있다.

다. 관련자 의견

- 의견없음

라. 의견에 대한 판단

- 의견없음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주문화관광재단 예산회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문화도시 홈페이지 고도화사업 등 수의계약 및 사업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주의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계획수립 현황

(금액 : 천원)

문서명	결재일	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공주문화도시홈페이지 고도화	2023.6.7	60,000	계약일로부터 ~ 2023.11	최초보고
문화관광홈페이지 고도화 추진계획_변경	2023.6.16	60,000	계약일로부터 ~ 2023.12	예산과목수정 (이월예산구분)
문화관광홈페이지 고도화 추진계획_재변경	2023.6.20	45,000	계약일로부터 ~ 2023.8	사업비지출수정

○ 계약현황

(금액 : 천원)

사업명	계약일	계약방법	계약금	계약업체	사업기간
2023년 문화도시 홈페이지 고도화	2023.8.9.	수의계약 (여성기업)	44,000	a	'23.8.10 ~'23.9.30
문화도시 홈페이지 운영 안 정화를 위한 서버 이관 및 추가페이지 구축	2023.10.16.	수의계약	16,000	b	'23.10.16. ~'23.11.20
문화도시 홈페이지 도메인. 호스팅 운영	2024.3.5.	수의계약	10,000	b	'24.3.5. ~24.12.31

나. 위법·부당사항

- ① 과업지침서상 참여 자격 미달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및 자격 검증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수의계약 체결 시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라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 또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시 정식 신고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 등 자격을 갖춘 자와 계약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23년 문화도시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의 『과업지침서』에도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및 착수 시 '직접생산증명서 제출'을 필수 계약 자격조건으로 명시하였다.
 - ⇒ 그러나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사업계획서를 2회 수정하는 과정에서 과업 내용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예정가격 산정 없이 사업비를 60,000천원에서 44,000천원으로 임의 조정하였다. 이후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과업지침서』상의 필수 계약 자격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지 않음에도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
- ② 계약상대자의 계약 불이행 묵인 및 시스템 마비에 따른 감독 태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과업 내용서 및 계약 조건을 전적으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결과 보고를 통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공주문화관광재단은 2024년에 「문화도시 홈페이지 도메인·호스팅 운영」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업지침서에 '도메인 월별사용료 지급' 및 '한국웹접근성평가원 인증서 발급'을 주요 과업으로 명시하였다.

- ⇒ 그러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도메인을 연장하지 않아 홈페이지 접속이 12일간(2024. 6. 14. ~ 6. 25.) 차단되는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켰고, '웹접근성 품질인증서' 또한 감사일 현재까지 발급·적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주문화관광재단은 이러한 과업 불이행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등,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용역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과업지시서상의 모든 과업이 적정하게 완료되었는지 실질적으로 검사·검수해야 하며, 향후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운영 시 계약상대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접속 차단 등 서비스 중단 장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상시 안정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통합업무시스템 클라우드 서버 임차 계약 체결 및 공인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시정·주의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금액 : 천원)

문서명	계약일	사업비	사업기간	용역사
통합업무시스템 구축	2023.5.15.	127,908	2023.5.15 ~ 2023.9.30	□

나. 위법·부당사항

① 클라우드 임차료 미지급으로 인한 인프라(HW) 운영 위험 방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완료 통보를 받고 검사를 마친 후에는 그 대가를 적기에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주문화관광재단 「예산회계규정」 제45조(지출원인행위 및 채무관리)에 의거하여, 재단은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정된 채무를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공주문화관광재단은 2023년 5월 15일 재단의 인사, 급여, 예산, 회계 및 전자결재 등을 처리하기 위한 '통합업무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30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 ⇒ 그러나 재단이 당초 수립한 '공주문화관광재단 통합업무시스템 구축 용역 제안요청서'를 확인한 결과, 도입되어야 할 서버 하드웨어에 대한 성능적 규격(ECR-001)만 단순 명시되어 있을 뿐, 클라우드 환경으로 인프라를 임차하여 운영한다거나 이에 따른 매월 별도의 임차료(월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인행위 및 예산 편성 정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특히, 사업담당 부서는 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시스템이 어떠한 형태의 계약을 바탕으로 구동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본 감사 진행 중 감사반이 실태 파악을 위해 '기관 정보시스템 리스트 및 자산 명세' 제출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계약 상대방(업체)에 연락하여 별도 작성되었던 약정서를 뒤늦게 제출하는 등 정보 자원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더욱이, 통합업무시스템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임차하여 운영하므로 '서버 임차료' 지급이 시스템 전반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핵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계약 상대방이 행정 착오로 청구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이유를 들어 시스템 개통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총 35개월분의 서버 임차료(총액 30,520,000원)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채 무단 방치한 사실이 있다.

② 무결재 계약 체결 및 기관 공인 무단 날인

- 공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 이라한다) 「위임전결규정」, 「문서관리 규정」, 및 「공인관리규정」에 따르면, 재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모든 계약 및 행정 문서는 공식적인 기안 및 내부 전결 절차를 거쳐 문서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원인행위의 정당성이 확립된다. 따라서 재단의 직인(기관 공인)은 정상적인 공인날인 신청 절차를 거쳐 내부 결재가 최종 완료된 문서에 한하여 대장에 등재한 후 날인되어야 한다.
- ⇒ 그럼에도 재단은 2023년 5월 3일 □과 '[□ 클라우드 서버 이용신청서(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재단 규정에 따른 공식적인 기안 및 내부 결재(문서등록)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해당 신청서를 무단으로 작성하여 해당 업체로 회신(계약체결)한 사실이 있다.

다. 관련자 의견

- 재단은 자체 서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통합업무시스템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 서버 이용이 필요하다는 □ 측의 안내에 따라 클라우드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인사·복무·급여·회계 등 재단 업무환경에 맞춘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당해 연도 클라우드 서버 이용은 구축 과정에 부수되는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월별 서버 이용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 또한 시스템 구축 이후 업체로부터 서버 이용료에 관한 청구서 발행, 대금 지급 요청 또는 미납 안내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시스템 구축 이후 서버 운영 방식, 별도 이용료 발생 여부 및 관련 계약자료를 면밀히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점은 미흡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계약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2023. 5. 3. 자 「□ 클라우드 서버 이용신청서(약정서)」의 직인 날인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방문 업체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재단 방문 당시 직원에게 직인 날인을 요청하여 처리한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어느 직원에게 요청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만으로는 직인 날인을 처리한 직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내부 결재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공인 날인대장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직인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의견에 대한 판단

- ① 클라우드 임차료 미지급으로 인한 인프라 운영 위험 방치에 대하여
 - 재단은 시스템 구축 당해연도(2023년)의 클라우드 서버 이용이 시스템 구축 과정에 부수되는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별도 이용료 발생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고, 업체 측의 청구 및 미납 안내가 없어 대금 지급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채무를 관리할 책임은 발주기관(재단)에 있다. 제안요청서 작성 시 매월 발생하는 임차료 항목과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사전 검토 소홀이다.
 - 비록 업체의 청구 누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통 이후 35개월간 총

30,520,000원의 채무를 방치하고 감사 전까지 계약 형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회계 건전성 및 정보 자원관리 소홀에 해당함으로 재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무결재 계약 체결 및 기관 공인 무단 날인에 대하여

- 재단은 당시 방문한 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빌려 직원이 직인을 날인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만으로는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는 행정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훼손한 심각한 절차적 위반 행위이다.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사유가 규정 위반 및 관리 부실에 대한 재단의 책임을 면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재단의 의견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정상적인 내부 결재 없이 체결된 「☐ 클라우드 서버 이용신청서(약정서)」의 법적 효력 여부와 계약 상대방의 청구 누락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기반으로 감사일 현재까지 미지급된 서버 임차료(30,520,000원 상당)에 대해 계약 상대방과 실제 이용 실적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 정밀 정산 절차를 선행하시고, 지급액이 최종 확정될 경우 재단의 공식적인 예산 원인행위 및 추경 편성 등 정당한 내부 회계 절차를 거쳐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 또한 직인 날인 시 「문서관리규정」 및 「공인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공인날인 신청 절차를 거쳐 내부 결재가 최종 완료된 문서에 한하여 대장에 등재한 후 날인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게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시정·개선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공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공주시가 출자·출연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이자,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각급기관(공공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 재단은 수감기간 2023년부터 202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유지보수 용역’,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 홈페이지 호스팅 및 통합유지보수 사업’, ‘재단 내부 통합업무시스템 구축 및 G20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기관의 보안 및 핵심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총 21건의 대내외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표1] 공주문화관광재단 정보화 사업 목록

(금액 : 천원)

사업명	계약기간	사업비	용역사	지적사항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유지보수	2024.01. ~ 2024.12.	1,440	[M]	유지보수내역, 산출내역 미첨부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유지보수	2025.01. ~ 2025.12.	1,440	[M]	유지보수내역, 산출내역 미첨부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유지보수	계약일로부터 ~ 2026.12	1,440	[M]	유지보수내역, 산출내역 미첨부

사업명	계약기간	사업비	용역사	지적사항
2023년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 홈페이지 호스팅 및 유지보수	2023.1.1. ~ 2023.12.31	12,804	[N]	유지보수내역, 산출내역 미첨부
2024년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 홈페이지 호스팅 및 유지보수	2024.1.1. ~ 2024.12.31	12,804	[N]	유지보수내역, 산출내역 미첨부
2025년 공주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2025.2.6. ~ 2025.12.31	12,000	[O]	산출내역,참여인력내역, 개인정보위수탁계약, 보안서약서 미첨부
2026년 공주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2026.1.30.~ 2026.12.31	16,000	[O]	산출내역,참여인력내역, 미첨부
통합업무시스템 구축	2023.05.15. ~2023.9.20	127,908	[P]	산출내역, 보안서약(확약)서 참여인력내역, 미첨부
통합업무시스템 유지보수	2024.11.6. ~2024.12.31	3,700	[P]	산출내역,참여인력내역, 개인정보위수탁처리, 보안서약서 미첨부
2025년도 공주문화관광재단 통합업무시스템 및 예산회계시스템(G20)유지보수	2025.1.23. ~2025.12.31	18,480	[P]	산출내역, 보안서약(확약)서 미첨부
2026년도 공주문화관광재단 통합업무시스템 및 예산회계시스템(G20)유지보수	2026.1.23. ~2026.6.30	9,702	[P]	산출내역 미첨부
2024년 공주문예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2024.1.1. ~2024.12.31	12,000	[O]	유지보수내역, 산출내역, 보안서약(확약)서, 개인정보 위수탁계약, 미첨부
2025년 공주문예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2025.1.1. ~2025.12.31	12,000	[O]	유지보수내역, 산출내역, 보안서약(확약)서, 개인정보 위수탁계약, 미첨부
2026년 공주문예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2026.1.1. ~2026.12.31	12,000	[O]	유지보수내역, 산출내역, 개인정보위수탁계약, 미첨부
공주문화도시 홈페이지 호스팅 및 도메인 연간운영	2023.1.1. ~2023.12.31	6,633	[Q]	유지보수내역, 산출내역, 보안서약(확약)서 미첨부
2023년 문화도시 홈페이지 고도화	2023.8.10. ~2023.9.30	44,000	[R]	산출내역, 보안서약(확약)서 미첨부
문화도시 홈페이지 운영 안정화를 위한 서버 이관 및 추가페이지 구축	2023.10.16. ~2023.11.20	16,000	[O]	산출내역, 보안서약(확약)서 개인정보 위수탁계약 미첨부
문화도시 홈페이지 도메인호스팅 운영	2024.3.5. ~2024.12.31	10,000	[O]	산출내역, 보안서약(확약)서 개인정보 위수탁계약,미첨부
2025 공주 문화도시 홈페이지 운영	2024.3.5. ~2024.12.31	10,000	[O]	산출내역, 보안서약(확약)서 개인정보 위수탁계약,미첨부
2023년 공주문화재야행 홈페이지 운영	2023.7.27~2023.12.31	4,900	[S]	산출내역, 보안서약(확약)서 개인정보 위수탁계약,미첨부
2024년 공주문화유산야행 홈페이지 운영	2024.6.5	4,800	[S]	산출내역, 보안서약(확약)서 개인정보 위수탁계약,미첨부
2025 공주국가유산야행 홈페이지 운영	2024.6.4. ~ 2024.12.31	4,800	[S]	산출내역, 보안서약(확약)서 개인정보 위수탁계약,미첨부
2024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공주 공산성 전용 홈페이지 구축	2024.8.27.~ 2024.11.29	10,000	[T]	산출내역, 보안서약(확약)서 미첨부
2024.공주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야간관광 전용 홈페이지 구축	2024.9.19.~ 2024.12.31	15,000	[T]	산출내역, 보안서약(확약)서 미첨부
2025.공주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야간관광 전용 홈페이지 구축	2025.5.16.~ 2025.12.31	13,000	[U]	산출내역, 보안서약(확약)서 미첨부
백제문화전당 홈페이지 구축	2025.12.12~ 2026.2.28	95,000	[O]	산출내역, 보안서약(확약)서 미첨부, 투입인력 확인 불가

나. 위법 부당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SW) 대가산정 기준 미준수 및 산출내역서 미첨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제1항 행정기관 등의 장은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사업의 원가 산정 시 「소프트웨어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대가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기준 적용

<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기준 구현단계 대가 산출방식 >

1. 보정 전 개발 원가 산정

· 보정 전 개발 원가 = 총 기능점수 × 기능점수당 단가

※ 총 기능점수 =

내부논리파일(ILF)+외부연계파일(EIF)+외부입력(EI)+외부출력(EO)+외부조회(EQ)

※ 기능점수당 단가 = 분석 + 설계 + 구현 + 시험

2. 보정 후 개발 원가 산정

· 개발 원가 = 보정 전 개발원가 × 보정계수

※ 보정계수 = 규모 보정계수 × 연계복잡성 보정계수 × 성능요구수준 보정계수 ×
다중사이트운영성 보정계수 × 보안성수준 보정계수

3. SW개발비

· 개발비 산정총액 = 개발 원가 + 이윤(개발 원가×이윤율(25%이하))

· 총 사업비 = 개발비 산정총액 + 부가가치세(개발비 산정총액×10%)

○ 따라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산의 낭비를 막고 용역 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적정 과업 규모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한 대가산정 기준에 의하여 명확한 기능점수(FP)나 공인된 소프트웨어 기술자 단가를 반영한 직무별 투입공수(M/M) 및 제경비, 기술료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구체적인 세부 산출내역서를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재단은 '2023년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 홈페이지 호스팅 및 유지보수', '2023년 통합업무시스템 구축', '2025년 공주 국가유산 야행 홈페이지 운영' 등의 정보화 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면서, 해당 과업들의 적정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사전에 객관적으로 작성하

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지침 제9조에 명시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기준 역시 적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재단은 계약의 근거가 되는 원가 계산 증빙서류와 산출내역서를 계약서류에 첨부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태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

② 용역사업 보안관리 및 보안서약서, 확약서 징구 소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8조(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및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 사항 등)에 의하면,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의 발주 및 용역 수행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보안 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정보가 다루어질 경우 용역업체 및 관계자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또한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 지침」 제11조(보안책임) 및 제26조(용역업체 보안) 제1항에 따르면, 외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위탁할 경우 용역 참여 인원에게 대한 보안서약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하지만 재단은 '2023년 및 2024년 대표 홈페이지 호스팅 및 유지보수', '2025년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등의 용역 계약을 추진하면서 재단은 용역업체 직원들로부터 보안서약(확약)서를 전혀 징구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여 보안관리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③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계약 조항 미이행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기술된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등이 명시된 문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 재단이 발주한 '2024년 및 2025년 공주문예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문화도시 홈페이지 도메인호스팅 운영' 사업 등은 회원가입 및 공연 예약

등 주민과 관람객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용역업체가 접근하거나 호스팅 서버를 관리하는 과업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서'를 첨부 및 체결하지 아니하였는바, 공공기관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④ 정보화 사업 준공 검사·검수 불철저 및 과업 산출물 관리 부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6조 및 제59조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 등의 장은 계약상대자(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 내역을 작성·관리하도록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 완료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는 과업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검사·검수 절차를 철저히 거쳐야 한다.

⇒ 그러나 재단은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유지보수 용역(2024년~2026년)' 계약^[표1] 참고 등을 수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기 '유지보수 내역서' 및 '성과 산출내역서'를 단 한 차례도 제출받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다수의 유지보수 사업에서 준공검사 시 실질적인 이행 내역을 검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대금을 전액 집행한 사실이 있다.

다. 확인자 의견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기준에 대한 업무 연찬이 충분하지 못하여 일부 계약서류와 유지보수 이행자료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점이 미흡하였습니다.

○ 향후에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 및 검수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 재단은 「2024년 대표 홈페이지 호스팅 및 유지보수」의 사업 추진 시 수행업체로부터 비밀유지 및 보안사항 준수 의무가 명시된 보안각서를 제출받아 관리하였으며, 「2025년 대표 홈페이지 호스팅 및 유지보수」, 「2026년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의 계약 추진 시에는 보안각서 및 보안서약서(확약서)를 제출받아 보안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 다만, 2024년도 사업의 경우 대표자 외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을 별도로

징구하지 않았으며, 2025년 및 2026년도 사업은 계약 문서철 및 전자공문에 해당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관리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향후 정보화 사업 추진 시에는 보안서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약서류와 지출결의 서류에 철저히 첨부하는 등 관련 규정 준수와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라. 의견에 대한 판단

- 재단은 일부 사업에서 보안각서를 받았으나 참여 인원 서약서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소명하지만, 용역 참여자 전원에게 대한 보안서약 징구 및 증빙 보관은 지침상 필수 사항이므로, 핵심 서류를 누락하거나 첨부하지 않아 보안관리 실태를 증명하지 못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주민 및 관람객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하거나 호스팅 서버를 관리하는 정보화 사업(공주문예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법정 필수 문서인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서'를 계약 상대방과 즉시 체결·보완하시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 또한 향후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대가산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원가를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 아울러, 계약 체결 및 준공 검사 시에는 관련 지침에 따른 제반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실질적인 과업 이행 내역을 엄격히 검증하는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소홀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시정·개선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재단법인 공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재단 시설물 및 위탁시설의 안전, 보안,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총 125대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

[표1] 공주문화관광재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운영부서	설치대수	설치 위치	최초설치일	시설명
계	125			
공연기획팀	12	건물 옥상	2019.1.	공주문예회관
문화공간팀	22	건물 앞, 뒤, 사무실 복도, 전시실 입구, 화장실 앞, 체험공방, 공연장 등	2025.12.31	백제문화전당
문화공간팀	38	복도, 공연장, 승강기 앞, 지하 전기실, 전시실 내부, 외부 등	2025.12.31 / 3대 2026.4.20	백제문화전당
문화사업팀	38	아트센터고마 건물 내외부, 사무실, 전시실, 주차장(38대)	아트센터고마 2013년 전시 2023.8월	아트센터고마
문화사업팀	15	공주문화예술촌 복도, 전시실, 주차장 (15대)	2023. 12. 14.	공주문화예술촌

(출처: 재단체출 감사자료 재구성)

나. 위법·부당한 사항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및 공개 소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1조에 따르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설치 근거·목적, 설치 대수·위치, 촬영 범위 등이 포함된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하지만 재단은 감사일 현재까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필수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② 신규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행정예고) 절차 미이행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실시 또는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재단은 백제문화전당(2025년 22대, 2026년 38대), 공주 문화예술회관 15대(2023년)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법령에 규정된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실시, 의견 청취, 주민 설명회 등의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기기를 무단 설치·운영하였다. 이로 인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절차의 객관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③ 안내판 설치 및 정보 안내 부적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러나 재단이 관리하는 시설 중 '아트센터 고마'를 제외한 공주문예회

관, 백제문화전당, 공주문화예술촌 등의 시설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설령 일부 장소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 법정 필수 안내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시설 이용자인 정보 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사실을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방치하였다.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운영 중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인프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운영·관리 방침 수립 및 공개] 설치 근거·목적, 대수·위치, 촬영 범위 등이 명확히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즉시 수립하시고, 이를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게재하여 일반에 상시 공개하시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판 설치 및 정보 보완] 안내판이 누락된 공주문예회관, 백제문화전당, 공주문화예술촌 등 해당 시설물에 안내판을 즉시 설치하시고, 기존에 설치된 안내판을 포함하여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 법정 필수 정보가 누락 없이 기재되도록 전면 정비하시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시설물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운영할 때에는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관련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사전 행정예고 실시 및 법정 필수 정보가 기재된 안내판 설치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업무용 컴퓨터 백신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보안관리 소홀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주의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공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내부 행정 업무 처리 및 재단 소관 시설(문예회관, 백제문화전당 등)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공주시민들의 각종 회원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별 업무용 컴퓨터(PC 및 노트북)를 인터넷망에 연결하여 운용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한 사항

-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74조(단말기 보안)에 따르면, 각급기관의 장은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입 등 외부 악성코드의 침투로부터 정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업무용 단말기에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실시간 감시 기능을 상시 켜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문화관광재단 자체 규정인 「공주문화관광재단 개인정보 처리지침」 제36조(개인정보 처리지침)에 따라 재단 회원 등 대량의 개인정보를 업무용 단말기에 보유 및 처리하는 경우, 악성코드나 랜섬웨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일 암호화와 더불어 단말기 자체 백신 최신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 하지만 재단에서 제출한 정보보안시스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내부 직원들의 PC 및 노트북 등의 단말기 보호를 위한 정품 백신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다. 확인자 의견

- 업무용 PC의 구입 및 임차 과정에서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와 최신화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지 못하였으며, 단말기 보안 관리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업무 연찬도 충분하지 못하였고,
- 향후에는 보유·임차 중인 업무용 PC와 노트북의 백신 설치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정기적인 최신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국가정보원 지침 및 재단 자체 규정을 위반하여 정품 백신이 설치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모든 업무용 단말기(PC, 노트북 등)에 대하여, 즉시 정품 백신 소프트웨어를 구입·설치하고 실시간 감시 기능을 상시 활성화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백제문화전당 홈페이지 구축 용역 준공 검수 부적정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시정 · 주의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공주문화관광재단은 백제문화전당 신규 홈페이지 및 예매·대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12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Ⅴ와 '백제문화전당 홈페이지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완료일인 2026년 2월 26일 준공 검사를 거쳐 대금 95,000천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본 사업은 감사일 현재 준공 후 1년 이내의 무상 하자보수 보증기간(2026년 2월 ~ 2027년 2월) 내에 있다.

나. 위법 부당한 사항

①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 및 사후 기술 검수 전무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6조(검사)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 및 용역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성과품이 당초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RFP)의 세부 과업 사양 및 기술 표준을 완벽히 충족하였는지 대조·검사하여야 하며,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재단 사업부서(백제문화전당팀)는 본 구축 사업에 대한 준공 검사를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총 55개 상세요구사항(기능 11건, 보안 9건, 제약사항 5건 등)에 대한 실제 시스템 구동 테스트나 기술 표준 적합성 검증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자가 제출한 완료보고서상의 일부 관리자 메뉴 및 UI 화면 캡처 서류만을 확인하여 준공 검사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② 제안요청서 대비 과업 미이행 (간편 로그인 미구현 및 웹접근성 미획득)

○ 재단은 제안요청서 기능요구사항(SFR-009 회원관리 시스템) 및 주요 사업내용을 통해 모바일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위한 네이버, 카카오톡 기반의 '간편 로그인 기능'을 반드시 구현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 종료 후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필수적으로 획득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완료보고서 및 최종 성과품을 확인한 결과, 계약상대자는 간편 로그인 연동 기능을 구현하지 않았고 '웹 접근성 품질마크'도 취득하지 않았으며, 완료보고서상에는 해당 품질마크를 정상 취득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음에도, 재단 사업부서는 이러한 과업 미이행 및 서류 불일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준공 검사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③ 용역사업 보안관리 조항 위반

○ 동 사업 제안요청서 보안요구사항(SER-001, SER-004)에 따르면 사업자는 착수 후 10일 이내에 투입 인력 전원의 자필 서명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료 시 자료 완전 삭제 후 대표자 명의의 준공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러나 재단 사업부서는 외부 기술 인력(총 10명)이 내부 회원 데이터베이스(DB) 및 소스 코드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면서도, 투입인력의 경력 증명 서류나 자필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무상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미구현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즉시 보완하고, 허위 기재된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조속히 취득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누락 된 외부 인력 10명의 '경력 증빙 및 자필 보안서약서·확약서'를 소급 징구하여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향후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개발 용역 사업의 준공 검사·검수 시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완료보고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기 바라며, 관련 지침에 따른 제반 서류(요구사항 추적표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실질적인 과업 이행 내역을 현장에서 엄격히 확인·검증하는 등 관련 기술 검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인사 채용 시 자치단체 사전협의 부적정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주의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신규직원 채용 시 지자체 사전협의 부적정 내역

공고일	협의요청일	승인일	건명	비고
2023.7.12.	-	-	2023 미래유산도시 브랜딩 홍보PM 모집공고	
2023.8.21.	-	-	2023 미래유산도시 브랜딩 홍보PM 모집 재공고	
2023.9.12.	-	-	2023 미래유산도시 브랜딩 홍보전담 PM 모집 재공고	
2023.5.24.	2023.5.18.	-	2023 공주문래유산도시페스타 <웰컴투신관동> PM 채용 공고문	

※ 출처 : 수감기관 내부 결재 시스템 검색 및 재구성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2022.11.24. 개정) Ⅲ. 직원의 인사 ② 채용계획의 수립 가목에 따라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은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계획 등에 대해 설립 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자치단체는 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통보는 모두 문서로 함.)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의 경우 사전협의 생

력이 가능하나 필요 시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전통보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공주문화관광재단은 공주시 주관부서와 2024. 3. 11.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사전협의 절차 생략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다.(신규 건 제외)

⇒ 그럼에도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생략 협의 전 이루어진 채용 4건에 대하여 자치단체 사전승인 없이 채용 절차를 추진한 사실이 있다.

다. 관련자 의견

- 당시 담당직원이 2022년 3월 입사자로 행정업무에 미숙하였고, 예산협의 과정에서 홍보PM 인력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함.

라. 의견에 대한 판단

- 관련자는 해당 사업의 예산협의 과정에서 홍보PM 인력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예산협의 시 협의 사항은 인건비, 인력 규모 등에 대한 예산에 대한 총괄적 협의로 채용 방법 등을 포함한 채용에 대한 구체적 협의는 아니므로 신규직원 채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움.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인사 채용 시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정상】 주의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① 인사채용 관련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미추진 내역

공고일	건명	인사위 의결일	비고
2023.04.10.	2023년 (재)공주문화관광재단 일반직 및 기간제근로자(휴직대체자) 채용 공고	-	
2024.02.28.	2024년 제1회 직원(일반직) 채용	2024. 3. 12.	공고 후 인사위 심의 및 의결

② 인사채용 관련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임의 변경 내역

공고일	건명	임의변경내용	비고
2023.6.23.	2023년 기간제근로자 제5차 채용	- 문화도시센터 대체인력(재단5급) 자격조건 변경 ※ 공고내용 중 해당 대체인력 자격조건 변경(완화)에 대한 내용만 심의·의결 하였으나 실제 공고 시 임의로 의결 내용보다 더 완화하여 공고	
2023.8.2.	2023년 제2차 직원(일반직) 채용	- 채용예정 직무분야, 응시 우대사항, 논술전형 출제분야 등 인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삭제하거나 추가하여 공고	
2024.5.22.	2024년 제2차 직원(일반직) 채용	- 인사위원회 의결 시 면접심사 점수 기준에 대한 언급 없었으나 실제 공고 시 “평균점수 8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 선정” 문구 추가	
2024.12.24.	2024년 제4차 직원(일반직) 채용	- 홍보마케팅팀 채용예정 직무분야 및 논술전형 출제 분야를 인사위원회 의결과 다르게 추가하여 공고	

③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지급 부적정 내역

구분	심의방법	수당 지급액(인당)	비고
2023년 제4회 공주문화관광재단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200,000원	

※ 출처 : 수감기관 내부 결재 시스템 검색결과 및 홈페이지 공고란 재구성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2022.11.24.개정본, 2023.12.12.개정본) III. 직원의 인사 ③ 채용시험의 공고 가 목에 따라 기관이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 「공주문화관광재단 취업규칙」제34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정원 내 직원의 공모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또한,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은 「공주문화관광재단 회의수당 및 강사료 지급에 관한 내규」(2023.3.24.일부개정 기준)에 따라 사이버위원회일 경우 지급액의 50%를 지급하여야 한다.
 - 이후 해당 내규가 개정된 내용을 봤을 때 ‘사이버위원회’는 실제 참석이 아닌 서면심의일 경우를 포함하는 취지로 판단된다.
- ⇒ 그러나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정원 내 직원을 채용하면서 직전 채용시 심의·의결 받았다는 사유로 별도의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동일 건에 대한 재공고 형식이 아닌 기간제근로자(휴직대체자) 채용 공고와 병합하여 별개의 채용으로 공고 등재하거나 공고 등재 후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는 등 인사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채용 공고하여야 했음에도 임의로 내용을 변경하여 채용 공고 등재하였고
- ⇒ 서면심의임에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등 인사위원회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다. 관련자 의견

- 2023년 건 관련하여 기존 심의·의결 받았던 인원(일반직)에 대한 재공고 성격으로 공고하였으며, 병합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정원 외 인력으로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의결 없이 채용 진행
- 2024년 당시 사업추진 및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운영 필요에 따라 채용 업무를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추진하면서 업무 연찬 다소 부족
- 직전 채용 시 합격자가 없는 분야에 대해 채용기준 현실적 완화 및 채용 예정 분야에 대한 응시자들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변경하였고, 동일 내용으로 자치단체와 사전협의 완료하였기에 문제 없을 것이라 판단
- 점수 기준 추가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 기준에 대한 명확화를 위해 의결 안과 다르게 공고하긴 하였으나 최초 공고 시점부터 공개된 기준이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

라. 의견에 대한 판단

-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제목만 재공고가 아니었을 뿐 ‘재공고 성격’으로 공고하였다고 의견 제출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기존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받았던 인력에 대한 재공고 추진 시 동일 공고 제목으로 재공고임을 표시하고 채용 일정만 변경하여 공고게재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임에도 해당 건은 기존 공고하였던 채용 공고와 아예 다른 제목으로 게재되었으며 별개의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병합하는 등 응시자들이 재공고 성격을 인지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공고하였으므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은 동일채용이라는 관련자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또한 채용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받는 것은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대상자들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로써 아무리 단순한 내용이라도 심의·의결 내용과 다르게 공고문을 변경하여 등재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스스로 의미 없게 만드는 행위이며 특히, 채용기준 및 점수 기준에 대한 변경은 특정인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부분이므로 채용기준의 ‘현실적 완화’ 및 ‘합격기준 명확화’라는 목적은 공고문의 임의 변경을 위한 이유가 될 수 없다.

- 또한 공고문을 인사위원회 의결과 다르게 임의 변경하여 게재하였다는 지적사항과 지자체 사전협의 및 최초 공고 게재 이후 공고문 변경 등과는 다른 내용이므로 관련자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인사 채용 공고기간 부적정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주의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인사채용 관련 공고 기간 부적정 내역

공고일	건명	채용인원	공고기간(실제)	적정 공고기간	비고
2023.3.16.	2023년 제1차 직원(일반직) 채용	4	3.16.~3.24.(8일)	3.16.~3.26.(10일)	
2023.1.2.	2023년 제1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27	1.2.~1.19.(17일)	1.2.~1.22.(20일)	

※ 출처 : 수감기관 홈페이지 채용공고란 재구성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2022.11.24. 개정본) Ⅲ. 직원의 인사 ③ 채용시험의 공고 가목 및 「공주문화관광재단 취업규칙」 제11조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 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 그러나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직원 채용 공고를 등재하면서 2023년 채용 2건에 대하여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다. 관련자 의견

- 공고기간(접수 마감일로부터 20일/10일 전 공고)에 대한 이해도 부족
- 재단 취업규칙 제11조(모집공고)에는 일반직 직원에 대한 모집공고 절차만 명시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3조(채용공고) 10일 이상 규정을 준용하였음.

라. 의견에 대한 판단

- 공주문화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채용)제3항에 따라 재단은 직원의 채용 시기, 기준, 방법 등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준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을 준용하였다는 관련자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인사 채용 시 심사 점수기준 임의 적용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주의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인사채용 심사 점수기준 임의 적용 내역

공고일	건명	내용	비고
2023.3.16.	2023년 제1차 직원(일반직) 채용	- 공고 시 면접 점수 기준에 대한 명시가 없음에도 임의적 기준 적용하여 최종 면접 전형 응시자 2명 탈락 처리	
2023.10.18.	2023년 제3차(일반직) 채용	- 논술전형 합격 기준 불명확하게 공고(80점 이상자 중 채용 인원의 2배수 '이상') - 공고 시 면접 점수 기준에 대한 명시가 없음에도 임의적 기준 적용하여 최종 면접 전형 응시자 4명 탈락 처리	
2023.11.29.	2023년 제1회 공주문화관광재단 임원(대표이사) 채용	- 점수 산출 시 최고/최저점을 제외하면서 면접위원 중 회피 인원 제외한 경우 최고/최저점 제외 미적용(응시자별 기준 상이)	
2024.2.28.	2024년 제1회 직원(일반직) 채용	- 공고 시 면접 점수 기준에 대한 명시가 없음에도 임의적 기준 적용하여 최종 면접 전형 응시자 4명 탈락 처리	

※ 출처 : 수감기관 제출 자료 및 홈페이지 채용공고란 재구성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2022.11.24. 개정본, 2023.12.12. 개정본) 1.총칙 ③ 기본원칙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임용은 법령·이 지침·정관·자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 같은 지침 III. 직원의 인사 ④ 시험의 방법 가목에 따라 채용시험의 방법, 시험의 단계, 시험 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 수준, 합격 결정방법 등은 자체 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

○ 따라서 공주문화관광재단은 「공주문화관광재단 취업규칙」 제12조에 따라 채용시험을 추진해야 하고, 이외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계획 수립 시 정하여 지자체 사전협의 및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고문에 명시한 바에 따라야 한다.

○ 직원 채용 모집 공고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2022.11.24. 개정본, 2023.12.12. 개정본) III. 직원의 인사 ③ 채용시험의 공고 다목 및 「공주문화관광재단 취업규칙」제11조제4항에 따른 내용을 열거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 시기 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3. 합격자 발표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기한
5. 기타 그 밖의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 그러나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직원 채용 공고를 등재하면서 2023년 3건, 2024년 1건의 채용에 대해 공고문에 면접 점수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성적순에 의거 처리하였어야 하나, 면접 진행 시 임의로 기준을 적용하여(면접점수 80점 이상인 자 중 성적순 최종합격) 최종 면접 응시자들을 탈락 처리하였으며, 2023년 3차 일반직 채용의 경우 논술전형 합격 기준을 불명확하게 공고(2배수 ‘이상’) 하였고, 2023년 임원 채용 시 점수 산출 방법을 응시자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는 등 인사채용에 대한 심사 점수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여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다. 관련자 의견

- 공고시 심사방법에 대한 사항은 편의를 위한 안내사항이지 세부절차에 대해 알려하는 의무사항은 아님. 또한 최고/최저점 포함 회피인원 산정일 경우 평균적용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임원추천위원회 동의를 통해 회피인원인 경우 최고/최저점을 적용하지 않음, 설사 적용을 하더라도 순위변동에는 이상이 없음.
- 당시 담당자의 업무 연찬이 다소 부족했던 부분으로, 특정인의 당락을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었음. 향후 공고문 내 전형별 기준 및 운영사항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음.

라. 의견에 대한 판단

-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I 총칙 ③기본원칙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의 임용은 법령·이 지침·정관·자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또한 이 지침은 임직원 채용 공고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그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등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임직원 채용의 절차는 구직대상자들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임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도 특별히 매년 전수조사를 하는 등 중하게 다루는 분야이며, 그에 따라 인사위원회 등 객관적 절차에 따라 확정된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대로 채용 절차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요한 점검 사항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 그럼에도 공고시 심사방법에 대한 사항은 편의를 위한 안내사항에 불과하다는 관련자의 의견은 지침을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방법으로 시험 점수 산출 방법을 임의로

적용한 것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다.

- 또한, 임의적 방법으로 점수를 산출하더라도 순위에 변동이 없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절차는 위반했으나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과론적인 의견에 불과할 뿐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므로 관련자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승진 의결 관련 기록물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개선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승진 관련 기록물 관리 부적정 내역

인사발령일	인사위원회 의결	기록물 관리 부적정 내용	비고
2024.1.1.	2023년 제7회 인사위원회	- 승진평정 자료 없음 (승진사유 : 근무 최소연수 충족)	
2025.7.1.	2025년 제5회 인사위원회	- 승진평정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X	
2026.1.1.	2025년 제7회 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 회의 의결서(원안가결)만 있고 의결 내용에 대한 회의자료 없음 - 회의자료에는 승진대상자만 열거 - 회의록은 있으나 승진확정자에 대한 논의 내용 없음	

※ 출처 : 수감기관 제출 자료 재구성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이 법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기록물 관리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제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

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그러나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직원의 승진 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승진 평정 및 의결에 대한 모든 과정을 기록물로 생산하여 관리했어야 하지만 직원들의 민감정보라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의결자료를 비공개 문서로 생산·관리하지 않고 파쇄하여 의결의 주요 결과를 남겨놓지 않는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부적정한 사실이 있다.

다. 관련자 의견

- 승진 평정 자료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추후 증빙하겠음.
- 승진 의결 관련 자료에는 직원의 민감한 인사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보안 유지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였으나, 비공개 문서로 생산·등록하여 보관하여야 할 관련 자료가 일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점이 미흡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인사 관련 자료의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되, 승진 평정 및 의결 과정에 관한 자료를 비공개 문서로 생산·등록하고 관련 기록물 관리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라. 의견에 대한 판단

- 해당 지적 건은 승진 평정 자료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운영위원회 승진 의결에 대한 기록물 관리 부적정에 대한 건이므로 승진 평정 자료가 존재한다는 관련자의 의견으로 지적사항 제외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비공개 문서 기록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성과평가 평정비율 적용 부적정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개선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성과평가 평정비율 적용 부적정 내역

연도	평정비율(규정)			평정비율(실제)			비고
	평가대상	평정자	평정비율	평가대상	평정자	평정비율	
2024 (23년실적) * 규정 24.11.12. 기준	총괄본부장	대표이사	100	총괄본부장	대표이사		성과급 심의위원회 (24.11.19.)
	실센터장	대표이사	60	실센터장	대표이사		
		총괄본부장	40		총괄본부장		
	팀장	대표이사	50	팀장	대표이사	50	
		총괄본부장	30		총괄본부장	50	
		실센터장	20		실센터장	0	
	차장,대리, 주임	대표이사	40	차장,대리, 주임	대표이사	40	
		총괄본부장	15		총괄본부장	15	
		실센터장	15		실센터장	15	
		팀장	30		팀장	30	

※ 출처 : 수감기관 제출 자료 재구성

나. 위법·부당사항

○ 공주문화관광재단 직원의 성과평가 중 역량평가에 대한 평정비율은 「공주문화관광재단 직원 성과관리 및 근무 평가에 관한 내규」(2024.11.12. 개정본) 제7조 제3항에 따라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중간 관리자 공식 시 상위 관리자가 평가를 대신한다.

- ⇒ 그러나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2024년 직원의 역량평가를 진행하면서 팀장직위 평가에 대해 직무대리로 인사발령한 실·센터장이 있음에도 실·센터장 직무대리가 팀장 직위와 동일 직급이라는 이유로 공석 처리하여 실제 공석인 총괄본부장의 평정 비율까지 모두 더해 대표이사 1명이 100% 비율로 평정하는 결과를 낳아 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였고, 차장·대리·주임에 대한 평정 시에는 실·센터장 직무대리가 규정 비율대로 평정하여 일관적이지 않은 기준 적용으로 형평성 또한 저해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공주문화관광재단 직원 성과관리 및 근무 평가에 대한 내규」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실질적으로 직원 평정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평정 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인사·채용 관련 규정 관리 소홀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개선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인사·채용 관련 규정 개선 필요 내역

규정명	내 용	비고
공주문화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규정에 정하지 않은 부분은 공주문화관광재단 취업규칙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어 재단 직원들의 복무 관리 기준 일원화 필요(의무교육, 복무 등) - 제6조(거주지 및 응시연령) ▶ 채용 시 거주지 제한에대한 근거가 되어 공개채용 원칙과 상충	
공주문화관광재단 취업규칙	- 제9조 제2항 및 제3항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특별채용 불가함에도 자체 규칙으로 특별채용 가능하도록 규정 - 제14조의2(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 반영하지 않음 * ‘18.5. 관계부처(재경부, 행안부, 국민권익위)에서 마련·배포 - 제3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 제5호 : 정원 내 직원의 공모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 사항으로 지정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단순 업무가 아닌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 운영 방식과 맞지 않으며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채용 시 공정채용 저해 요소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자치단체 사전협의 절차도 생략됨에 따라 (2024.3. ~ / 신규건 제외) 최소한의 규제 장치 필요 - 제111조(징계의 감경)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수수과 공금의 횡령, 유용, 채용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나 규정에 반영하지 않음 - 채용서류 보관관리에 대한 자체 규정 미흡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예외사항’ 을 준용하여 감사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탈락자 서류 포함한 채용관련 서류 영구 보존 가능함에도 자체 규정 마련하지 않음	

공주문화관광재단 직제 및 정원 운영 규정	- 제4조제3항 ▶ 기간제(계약직)의 경우 재단의 성격상 종합업무를 추진함에도 정원의 인력으로 규정하여 공정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취약	
------------------------------	---	--

※ 출처 : 수감기관 통합규정집 재구성

나. 위법·부당사항

- 공주문화관광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로서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해야 함에도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자체 규칙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거나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자체 규정에 반영하지 않는 등 인사·채용 관련 규정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사·채용 관련 내용 등을 상위 규정에 맞추어 자체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직원 의무교육 실시 및 이수 소홀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주의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연도별 의무교육 시행 현황

교육명	연도				비고
	2023	2024	2025	2026	
4대 폭력 예방 교육	0	0	0	0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X	X	0	예정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0	X	0	예정	
성희롱 예방교육	0	0	0	0	4대폭력 예방 교육에 포함
안전 및 보건관리 교육	0	0	0	예정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0	0	0	0	
능력개발 및 기술훈련 (직원 역량강화 교육 외)	0	0	0	0	

○ 직원 의무교육(4대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현황

교육명	연도(명)			비고
	2023	2024	2025	
4대 폭력 예방 교육	24	4	17	퇴사자 및 중간입사자 포함
(성희롱 예방교육 미이수)				

※ 출처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법·부당사항

- 「공주문화관광재단 취업규칙」 제115조(교육훈련)에 따라 공주문화관광재단은 직원의 자질 향상과 능력개발 및 기술훈련을 위한 교육훈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임직원은 4대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각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또한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18조에 따라 공주문화관광재단은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그럼에도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직원 45명이(23년 24명 / 24년 4명 / 25년 17명) 의무교육으로 지정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퇴사자 및 중간입사자의 경우 재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더라도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이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공주문화관광재단 취업규칙」 및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등 관계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직원 의무교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포상대상자 공적심의 미 실시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개선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공주문화관광재단 포상수여 현황

연도	지급대상자		포상명	훈격	수여사유
	부서명	성명			
계			10건		
2023	문화정책팀	d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장관	전국 119개 기관 중 1개 기관 선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발전 표창
2023	관광산업팀	e	문화재청장상	청장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유공표창
2023	관광산업팀	f	충남도지사상	도지사	지역 문화유산 발전 유공표창
2023	관광산업팀	g	공주시장상	시장	문화유산 야행 유공표창
2023	문화 관광센터	h	충청남도지사상	도지사	세계잼버리스카우트지원 유공표창
2023	관광산업팀	i	문화재청장상	청장	문화재 활용 유공 표창
2023	생활문화팀	j	충청남도지사상	도지사	대백제전 유공표창
2023	플랫폼 솔루션팀	k	충청남도지사상	도지사	지역문화예술발전 공적 우수에 따른 표창
2025	공주문화 관광재단	공주문화 관광재단	보건복지부장관상	장관	(재)공주문화관광재단 보건복지부장관상 기관상
2025	관광산업팀	l	공주시장상	시장	2025년 하반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 출처 : 수감기관 통합규정집 재구성

나. 위법·부당사항

- 공주문화관광재단은 직원을 포상할 때 「공주문화관광재단 취업규칙」 제 105조(포상)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각 팀장의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그럼에도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202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9명(기관상 제외)을 포상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공주문화관광재단 취업규칙」 등 관계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향후 포상대상자 선정 시 인사위원회 심사를 받는 등 업무 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호봉 산정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시정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연번	성명	기존		정정(의견)		정정사유	입사일
		호봉	근속호봉	호봉	근속호봉		
1	m	7년8월	1년8월	7년7월	1년8월	오계산	2026.03.10.
2	n	5년1월	2년3월	4년11월	2년3월	오계산	2026.03.01.
3	o	5년2월	1년1월	4년5월	없음	반영률 오류	2024.12.01.
4	p	20년1월	1년6개월	계산필요	3년6개월	경력기간 중복산입 및 민간기업 경력 확인 필요	2024.04.20.

나. 위법·부당사항

- 「공주문화관광재단 보수규정」 제7조(초임호봉의 확정)에서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 호봉을 2호봉으로 확정하되, [별표 3]에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경력환산표에 따른 경력을 가산하여 확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입사일 당시의 보수규정으로 경력환산을 하여야 한다.
- 불임 경력환산표(2023. 2. 28. 일부개정)에서는 채용 직무와 관련한 민간 법인, 단체,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한 환산율을 60~10%라고 규정하

고 있고, 2024. 6. 21. 일부개정된 규정에서는 채용 직무와 관련한 민간 법인, 단체,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 환산율 40%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경력환산표의 비고 4번에서 2개 이상의 경력(군경력 포함)이 같은 기간에 중복되는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환산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함에도 공주문화관광재단은 $m \cdot n$ 의 호봉 산정 시 경력합산에 대해 오계산하여 호봉을 과다 산정하였고, o의 민간회사 근무경력에 대한 환산율을 오적용하였으며, p의 경우 민간회사 근무경력 환산율 오적용 및 경력 중복기간 산입으로 호봉을 과다 산정한 사실이 있다.

⇒ 그 외 일부 직원의 경력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거나 경력증명서상 상세 근무내역이 불명확하여 경력환산표 적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호봉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확인되었다.

다. 관련자 의견

- 「공무원 보수규정」내 경력환산율표에 근거하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력을 100%로 인정하나,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100% 인정받지 못하였고, 동 규정 내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의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100퍼센트 이내로 환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 동일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라. 의견에 대한 판단

- 「공주문화관광재단 보수규정」의 제2조(적용범위)에서는 임직원의 보수는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고, 공무원 보수규정 내 경력환산율표는 공무원 보수규정 내 규정된 직렬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라 볼 수 없고, 공주문화관광재단 보수규정 내 호봉획정과 관련된 조문에서도 이를 준용한다는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공주문화관광재단 임직원에 대한 호봉 산정은 「공주문화관광재단 보수

규정」내 경력환산표를 따라야 함이고, 「공무원 보수규정」 내 경력환산표율은 적용할 수 없기에 해당 의견은 수용할 수 없음.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공주문화관광재단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잘못 산정된 호봉에 대하여 정정하는 등 시정하시기 바라고, 업무 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 또한 경력증명서 확인 및 상세 근무내역 불명확 등 호봉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니, 전체적으로 호봉 산정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여 자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호봉의 정정 및 재확정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시정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연번	대상자	호봉 변경 사유	비고
1	q	경력 추가증빙	
2	r	보수규정 일부개정(2023.3.28.)	
3	s	경력 추가증빙	
4	t	경력 추가증빙	
5	u	경력 추가증빙	

나. 위법·부당사항

- 「공주문화관광재단 보수규정」 제8조(호봉의 재확정)에서는 직원이 재직 중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호봉을 재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경력합산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호봉을 재확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11조(호봉의 정정)에서는 호봉의 확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고 되어 있다.

- 「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확정)에서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에는 초임호봉 확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와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 ⇨ 그러함에도 공주문화관광재단은 5명의 호봉을 변경하면서 재획정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공주문화관광재단 보수규정」 및 「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기존 호봉의 정정으로 처리하여 소급 지급한 급여 등을 환수하는 등 호봉의 재획정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여비 지급 소홀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시정

【재 정 상】 환수(392,400원)

【지적내용】

가. 현 황

○ 국내여비(관외) 과다지급 현황

연번	부적정 지급 사유	대상자(명)	과다지급액(원)
계		18명	242,400
1	대중교통 운임 지급 시 주차비 지출	13명	171,700
2	출장일정 내 식사 제공	2명	33,200
3	관용차에 준하는 차량 이용 시 일비 미감액	3명	37,500

○ 국내여비(관내) 과다지급 현황

연번	부적정 지급 사유	대상자(명)	과다지급액(원)
계		8명	150,000
1	왕복 2km이내 근거리출장 정액지급	2명	20,000
2	여비정산서 내 외출,복귀시간 수기변경	6명	130,000

※ 관외, 관내여비의 과다지급 상세현황은 붙임으로 같음함

나. 위법·부당사항

○ 「공주문화관광재단 여비규정」에 따르면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며, 국내여비는 공주시 행정구역 안에서의 출장지는 관내 출장

지로 기타의 지역은 관외 출장지로 구분하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표에서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하며,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는 이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등이 있다.

⇒ 그러함에도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국내자동차운임 지급 시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한 경우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이 아닌 연료비를 기준으로 지급하였으며, 유류비 및 통행료 등은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주차비를 지급한 경우가 다수 있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에서는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관외출장으로 참석하는 행사에 식사가 제공된다면, 식비를 감액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

⇒ 그러함에도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만찬, 조식이 포함되는 관외출장에 대해 식비를 감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3항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는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되되, 공무용 차량 또는 공무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 ⇒ 그러함에도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공주시 유관부서와 동행하는 관외 출장 3건에서 공주시청 버스를 이용하였는데 일비를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다.
- 「공주문화관광재단 여비규정」에서 관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0,000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출장시간을 근무상황부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무상황부의 경우 전자결재(복무)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현재 세콤캡스를 이용한 외출, 복귀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출·퇴근 및 출장 등의 근무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출장 시 사전 현지 출퇴근 신청을 제외한 출장의 경우 외출·복귀 처리를 통하여 출장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 또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은 정산신청내역과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한 정산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 ⇒ 그럼에도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근무지내 왕복 2km 이내 출장 2건에 대하여 정액여비로 초과 지출하였고, 여비 정산서상 외출, 복귀시간을 수정하여 신청한 여비를 실제 근무상황부와 비교하지 않고 지급하여 6건의 여비를 초과 지출하였다.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공주문화관광재단 여비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과다 지급된 여비 392,400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행동강령 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주의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외부강의등 규정 위반 현황

연번	신고자	외부강의일	신고일	비고
1	v	매주 수요일 / 총 54회	2023. 4. 3.	검직신고 처리
2	w	2023. 7. 6.~7. 27.(4회)	2023. 7. 27.	월3회제한 초과 신고기한 초과 / 11일
3	x	2024. 6. 25.	2024. 7. 19.	신고기한 초과 / 14일
4	y	2025. 10. 17.	2025. 12. 8.	신고기한 초과 / 42일

○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점검 : 실시내역 없음

나. 위법·부당사항

○ 「공주문화관광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내규」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서는 임직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명세 등을 대표이사에게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일정 기간 계속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 각 외부강의의 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고하여야 하므로 마지막 강의가 아닌 최초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또한 「공주문화관광재단 취업규칙」 제21조(겸직금지)에 따르면 임직원이 직무 이외의 다른 영리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직원은 대표이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요하는 사항 중 정기적 직무가 포함되어 있다.
- ⇒ 공주문화관광재단은 직원의 정기적인 활동에 대하여 겸직 신고가 아닌 외부강의 등 신고로 관리하였고,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 등의 일괄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신고기한을 최대 42일 초과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공주문화관광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내규」 제36조(준수 여부 점검)에 따르면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그럼에도 공주문화관광재단은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공주문화관광재단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휴직 실태점검 소홀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주의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연번	점검대상기간	실시여부	비고
1	2024년 하반기	여	2024.6.21.규정신설
2	2025년 상반기	여	
3	2025년 하반기	부	
4	2026년 상반기	대상없음	

나. 위법·부당사항

- 「공주문화관광재단 취업규칙」 제49조의3(휴직 실태점검)에서는 대표이사는 휴직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1월 30일, 7월 3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 그러나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2025년 하반기에 휴직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음에도 대표이사에게 이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였다.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공주문화관광재단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복무 관리 소홀

【기 관 명】 공주문화관광재단

【행 정 상】 시정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공주문화관광재단 복무점검 실태 : 총 2회 실시(2025년 4분기, 2026년 1분기)
- 공주문화관광재단 복무점검 적발사항

연도	출퇴근시간 미준수	여비 부당수령	시간외근무 부적정	공가 등의 기준 미준수	중식시간 미준수	보안소홀
2025년 4분기	7		-	1	-	-
2026년 1분기	44	8	-	-	-	17

- 객관적인 증빙 없는 근태내역 수정 내역

연도	건수	사유
2023	6	출퇴근 기록 누락 등(2건), 수기출퇴근부 미증빙(4건)
2024	17	익일퇴근(3건), 출퇴근 기록 누락 등(13건)

나. 위법·부당사항

-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2025년 4분기부터 자체적인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복무점검 실시 후 위 현황과 같이 복무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이 있었고 경중에 따라 「공주문화관광재단 취업규칙」, 「공주문화관광재단 직원 성과관리 및 근무평가에 관한 내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

-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에 따른 여비 수령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 그러함에도 공주문화관광재단은 2026년 1분기 복무점검 과정에서 여비 부당수령 의심내역을 적발하였으며, 점검 결과 통보 공문을 통해 관련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를 명시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부정수령자에 대한 환수 및 가산징수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공주문화관광재단은 시간외근무에 대해 「공주문화관광재단 시간외근무 등의 운영에 관한 내규」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고, 출퇴근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해 출퇴근시간을 기록·활용하여 초과근무 등의 근태관리를 하고 있으며, 축제·행사 등의 경우 현지 출퇴근을 위해 사전 협의를 통한 수기근무대장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퇴근 기록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내부적으로 수립하여 기준에 따른 수정사유 및 근거 자료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 ⇒ 그러함에도 공주문화관광재단은 근태관리에서 내부적인 운영기준이나 처리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빙의 보존 없이 23건의 출퇴근내역을 수기 수정하여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였다.

【 처 분 요 구 】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 「공주문화관광재단 취업규칙」 및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2026년 1분기 복무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여비 부정수급 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